

현안분석 2007-

입법평가 연구 07-10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장병일 · 성홍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Analy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Regarding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ystem of Crime Victim
Protection,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Switzerland Advisory Council -

연구자 : 장병일(부연구위원)

Jang, Byoung-II

성홍재(경찰대학교 교수)

Sung, Hong-Jae

2007.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입법자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법률을 통하여 규범수범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입법평가는 현실에서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법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다루며, 무엇보다도 모든 중요한 효과성 관련 요소들에 관심이 있다. 그 핵심요소가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이다.

한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4개 기관에 제한하여 이 법률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기구로서 법무부가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율한다. 둘째,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고, 셋째 경찰이 여성가족부의 도움으로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많은 민간기구들이 존재한다. 모든 기구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첫째, 4개 기관에 의한 피해자보호활동들이 중복된다. 둘째, 조직적 문제점, 즉 법무부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구로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민간기구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미약하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독기구로 법무부가 아니라 국무총리밑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각 기구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 영역내에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의 역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담이 줄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키워드 : 자문기구, 피해자보호 및 지원, 입법평가, 법무부, 검찰, 경찰, One-Stop 지원센터

Abstract

Legislators attempt to influence the behavior of <rule models> by law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interests in whether law performs its functions in reality and accomplishes its purposes, and, most of all, is interested in all important element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The core factors ar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efficacy.

The Republic of Korea has a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owever, no one is sure that the law performs its <intended> functions. With this reason, the author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Act with a focus on four organizations. First, as a supervising institution, the Ministry of Justice controls and coordinates all policies and systems. Second, the Prosecutors' Office is in charge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ird, the Police manages 'One-Stop Supporting Center' with a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Woman and Family. Fourth, there are many civil institutions. All of the organizations are accomplishing their own tasks, successfull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ictims, which was well explained in this study.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gaining grounds regarding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irst, victim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four organizations are overlapped. Seco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not a suitable supervising institution for victim protection. Third, the role of civil organizations is very weak in Korean society.

For that reason, such alternativ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stead of the Ministry of Justice, a council needs to be founded as a supervising institution under the authority of Prime Minister. Second, the boundary of missions of each organization need to be set clear, and the protection activities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boundary. Finally, the role of civil institutions needs to become the core from a long-term viewpoint. This way, it will be possible that the burden of public organizations is reduced and the waste of budget is avoided, which is further likely to have an impact on the Act within the aspect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Key Words : **Advisory council,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valuation of legislation,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Office, Police, One-Stop Supporting Center**

약어 표

AB	Amtliches Bulletin der Bundesversammlung (연방의회보)
aBV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vom 29. Mai. 1874 (1894년 5월 29일자 스위스 연방헌법).
AHV	Alters- und Hinterlassenen- versicherung (고령 및 소외자보험)
BBl	Bundesblatt (관보)
BFS	Bundesamt für Statistik (연방통계청)
BGE	Entscheid des Schweizerischen Bundesgerichts (스위스 연방법원결정)
BJ	Bundesamt für Justiz (연방법무부)
BStp	Bundesgesetz vom 15. Juni 1934 über die Bundesstrafrechtspflege, SR 312.0 (연방형사사법에 관한 1934년 6월 15일자 연방법률)
BSV	Bundesamt für Sozialversicherung (사회부 조보험을 위한 연방관청)
BV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vom 18. April 1999, SR 101. (1999년 스위스 연방헌법)

CEFOC	Centre d'études et de formation continue pour travailleurs sociaux.
CETEL	Centre d'études, de technique et d'évaluation législatives der Universität Genf. (제네바 대학 입법평가 기술연구소)
ELG	Bundesgesetz vom 19. März 1965 über Ergänzungsleistungen zur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ersicherung, SR 831.30 (고령, 소외자 그리고 (국영)상해 보험 보조이행에 관한 1965년 3월 19일자 연방법률)
FDK	Konferenz der Schweizer Psychologinnen und Psychologen (스위스 심리학자 회의)
IV	Invalidenversicherung (국영) 상해보험.
KKJPD	Konferenz der kantonalen Justiz- und Polizeidirektorinnen und -direktoren.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가와 지방 경찰청장 회의)
MO	Bundesgesetz vom 12. April 1907 über die Militärorganisation(Militär- organisation), SR 510.10(군사조직에 관한 1907년 4월 12일자 연방법률)
MStP	Militärstrafprozess vom 23. März 1979, SR 322.1 (1979년 3월 23일자 군형사 소송법)
N	Nationalrat (하원의회)

OG	Bundesgesetz vom 16. Dezember 1943 über die Organisation der Bundesrechtspflege (Bundesrechts- pflegegesetz), SR 173.110. (연방사법조직에 관한 1943년 12월 16 일자 연방법률)
OHG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Oper- hilfegesetz), SR 312.5 (범죄피해자 지원 에 관한 1991년 10월 4일자 연방법률)
OHV	Verordnung vom 18. November 1992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pfer- hileverordnung), SR 312.51.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1992년 11월 18일자 규칙)
S	Ständerat (상원의회)
SASSA	Schweizerische Arbeitsgemein- schaft der höheren Fachschulen für soziale Arbeit. (스위스 사회사업을 위한 전문학교 노동 자단체)
SKöF	Schweizerische Konferenz für öffentliche Fürsorge (공공 복지를 위한 스위스 회의)
SODK	Konferenz der kantonalen Sozialdirektorinnen und -direktoren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부장 회의)
SPIN	Schweizerisches Polizei-Institut (스위스 경 찰연구소)

SR	Systematische Sammlung des Bundesrechts (연방법령집)
StGB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vom 21. Dezember 1937, SR 311.0 (1937년 12월 21일자 스위스 형법전)
SuG	Bundesgesetz vom 5. Oktober 1990 über die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Sub- ventionsgesetz), SR 616.1 (재정지원과 보상에 관한 1990년 10월 5일자 연방 법률)
SUVA	Schweizerische Unfall- versicherungsanstalt (스위스 사고보험시설)
VPB	Verwaltungspraxis des Bundes (연방행정 실무)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약어 표	7
I. 서 문	15
1. 입법평가	15
(1)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15
(2)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과제 선정경위와 연구방법	18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23
1. 스위스 범죄피해자 자문센터의 활동	23
(1) 의 의	23
(2) 자문 받는 사람의 수	24
(3) 자문의 종류	25
(4) 자문 받은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	26
(5)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에 따른 조사	27
(6) 범죄행위의 종류	28
(7) 경찰과의 관계	30
(8) 자문센터를 통한 지원활동의 범위	31
(9) 자문센터들의 조직(1997/98년의 보고기간)	32

(10) 자문센터의 인력구성	34
2. 분석 결과	35
I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37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37
(1) 지원대책의 발생	37
(2) 범죄피해자대책의 연혁	44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48
(1) 개 관	48
(2) 법무부의 피해자 구조제도	49
(3) 검찰청의 피해자 구조제도	57
(4) 경찰청	59
(5) 민간 범죄피해자 보호법인	68
3. 정부기관별 비교	71
IV.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73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79
1. 국무총리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	79
2. 경찰과 검찰의 업무 영역 구분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80
3. 관련 부처 업무영역의 명확화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83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법인의 역할	84
VI.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87
참 고 문 헌	91

▣ 부 록

【부록 1】 스위스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97
【부록 2】 범죄피해자보호법	106
【부록 3】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114
【부록 4】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122
【부록 5】 << 참고자료1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현황 ...	124
【부록 6】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	125
【부록 7】 기초 시설비(2006년)	126
【부록 8】 인건비 연도별 보조액(2006~2010년)	127
【부록 9】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비(2007년 이후)	128
【부록 10】 범죄피해자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의 예산비용 (2006년)	129
【부록 11】 스위스 각 Kanton의 공인 피해자지원	130
【부록 12】 한국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 부서	133

I. 서 문

1. 입법평가

(1)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생활관계의 복잡화로 인하여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나친 법제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법의 실효성 저하, 법의 수용도 저하 및 법의 지도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법제화의 원인 및 결과를 법정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질을 높이려는 하나의 제도가 입법평가제도이다.

즉, 입법평가제도는 규범홍수현상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적절한 예방수단과 효과적인 억제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입법학연구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평가는 세 가지 기능²⁾을 가진다.

첫째, 입법의 합리화기능이다. 법해석학에 있어서 법률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출발하나, 입법학은 법률의 합리성 도달을 목표로 한다. 입법평가제도는 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절차으로써 자원의 명확화를 통하여 과도한 규율과 손실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기본적으로 향상되고 간소하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기능이다. 정부정책의 정당성은 종래 합법성과 합리성에 의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민주적 참가라는 절차적

1) Carl Böhrer, Zuerst testen dann verabschieden. Erfahrung mit der Prüfung von Gesetzentwürfen, ZG. 1992, 194ff.

2) Klaus König, Evaluation als Kontrolle der Gesetzgebung, in: Waldemar Schreckenberger(Hrsg.), Gesetzgebungslehre, - Grundlagen, Zugänge, Anwendungen - , 1986, S. 99.

1. 서 문

정당성 외에 평등, 결과의 타당성 및 이를 기초하는 과학성이라는 실체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입법평가제도는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런 시각에서 일본은 1997년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에서 정책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책은 실시단계에서 항상 그 효과가 검토되고 재검토와 개선이 부단히 이루어져 이를 위해서 정책효과에 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이것을 정책입안부문의 기획입안작업에 반영시키는 구조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종래 행정에 있어 법률제정과 예산 획득에 중점을 두었을 뿐 그 효과와 사후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근거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한다는 평가기능을 경시하는 풍조였다. 그래서 2002년 4월 □□행정기관이 실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정책평가법)□□이 제정·시행되어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의 철저, 국민 스스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 구현, 국민적 시점에서 성과책임 행정으로의 전환을 기하고 있다³⁾.

셋째, 입법의 통제기능이다. 입법평가제도는 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 행정적·재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뿐 아니라 여론에 의한 통제의 도구가 된다. 그 뿐 아니라, 입법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입법평가제도는 법의 실효성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의 기법을 입법에 포섭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법, 경험적 조사 및 비용편익분석 등이 사용되고 있다.

3) 이토우 가즈코, 일본 입법과정의 입법평가에 관해서,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한 한일 법제전문가 초청워크샵 발제문, 2007.11.24, 219면.

일본의 경우 ‘입법평가’라는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막연하게 실행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법규는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정책기획입안에 반영시키는 정책평가의 틀 안에서 입법평가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정의 효과에 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정책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대개의 경우 법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고, 이러한 법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다른 문제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입법평가라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⁴⁾.

스위스 역시 일찍이 이러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70조(실효성 검사)⁵⁾와 2002년 12월 13일 연방의회법 제26조와 제27조⁶⁾를

4) 이또우 가즈코, 일본 입법과정의 입법평가에 관해서,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한 한일 법제전문가 초청워크숍 발제문, 2007.11.24, 220면.

5) 연방의회는 연방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사되도록 배려한다.

6) 제26조 감독권

1.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와 연방행정, 스위스 연방 법원과 다른 연방과제를 수행하는 관청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2. 연방의회는 1967.6.28. 재정통제위원회법 제8조의 영역에서 재정회계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3.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 a. 합법성
- b. 규정적합성
- c. 합목적성
- d. 실효성
- e. 경제성

4. 감독권은 결정을 폐지 또는 변경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내용적 통제는 배제된다.

제27조 실효성 검사

법률에 의해 설치된 연방의회 기구들은 연방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사되도

1. 서 문

통하여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스위스 법무부에서는 “범죄행위 피해자지원의 실행과 효과성에 관한 3차 보고서(1993-1998)”⁷⁾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스위스 법무부는 입법평가방법이나 평가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법률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특히 입법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실용성, 집행가능성 등 여러 영향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위한 어떠한 기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절제한 제정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의 현상을 검토·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의 하나인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틀을 구상하고 향후에 이 제도를 도입·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여러 사례 중 스위스 보고서를 참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여러 모델 중 한 가지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형 입법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선정경위와 연구방법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록 준비하려한다. 여기에서 연방의회 기구들은 :

- a. 연방정부에게 실효성 검사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b. 연방정부의 위탁에 의해 수행된 실효성 검사를 검사할 수 있다
- c. 실효성 검사 자체도 위탁을 줄 수 있다.

7) Dritter Bericht des Bundesamts für Justiz an den Bundesrat über den Vollzug und die Wirksamkeit der Opferhilfe (1993 - 1998). Bern, Mai 2000.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률로서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다. 제정순서로서 본다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1987년도에 제정되어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6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소홀히 하였던 피해자 인권보호까지 다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었다. 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 즉 ‘기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이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되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 구조와 형사절차 참여보장,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범위는 보호·지원기관에 의한 보호와 상담 및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호·지원기관에 의한 보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보호 및 상담과 경제적 지원이다. 보호 및 상담 내용으로서는 상담 및 법률 자문, 의료제공과 신변보호 등을 들 수 있고, 경제적 지원내용으로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 형사조정, 생계비,

1. 서 문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지원내용은 수사과정에서의 참여권보장, 재판과정에서의 참여권보장, 형집행과정에서의 의견진술,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신변보호 등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스위스에도 존재한다. 즉, 스위스의 경우 우리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구조와 같은 목적을 가진 『범죄피해자 지원법⁸⁾』이 존재할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세부조사보고서로써 1996년 4월 1차 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 1998년 2차 보고서, 2000년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의 실행과 효과성에 관한 3차 보고서(1993 - 1998)”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어 feedback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위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입법평가의 기능을 살려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되어 위 법률에 대한 효과 분석을 다루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스위스의 3차 입법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시범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는 지방자치단체⁹⁾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문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사법기관인 법무부, 검찰, 경찰뿐 아니라 민간 보호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스위스

8) 스위스의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제 1 조 (목적과 대상);

①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그 법적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상담

나. 피해자보호와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

다. 보상과 배상

9) Kanton = 州에 해당한다.

의 자문센터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기구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먼저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활동영역 그리고 자문센터의 조직 등을 소개하고¹⁰⁾,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기구 및 민간 지원센터의 현황과 활동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적시해야 할 것은 비용-편익분석을 본 연구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우선적으로 법경제학적인 분석으로서, 경제학 또는 경영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법사회학과 행정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여 고찰되었다.

10)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은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의 실행과 효과성에 관한 3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1. 스위스 범죄피해자 자문센터의 활동

(1) 의 의

1993.1.1부터 효력이 발생한 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연방은 첫 6년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개의 자문센터를 설치해야 했으며, 총 61개의 자문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문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센터에게도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범죄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자문센터의 과제는 피해자에게 의학적·심리적·사회적·물질적·법적 지원을 해 주거나, 다른 자문센터와의 연계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2항). 자문센터들은 이런 도움을 즉시 행하고, 장기간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만 행한다(피해자지원법 제3조 제3항). 자문센터의 지원은 피해자지원법 공표이전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된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피해자지원법 제12조 제1항¹¹⁾). 또한 피해자지원법 제3조¹²⁾에 의하면 범죄행

11) 제12조 전제조건

① 피해자는 그 소득평가액이 양로, 유족 및 (국영)상해보험을 위한 추가지급금법(ELG)에 대한 1966년 3월 19일 연방법 제3c조에 따라 양로, 유족 및 (국영)상해보험을 위한 추가지급금법(ELG) 제3b조 제1항 a의 일반적 필요생활비를 위한 최고적정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② 피해정도가 심하고 특별한 정황이 입증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수입과 별도로 배상할 수 있다.

12) 제 3 조 자문센터(상담소)

① 각 주는 전문적으로 자립형 공식·비공식 상담소를 운영한다. 다수의 주(州)가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위에 의해 신체적·성적·정신적 보존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피해자들은 자문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주거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자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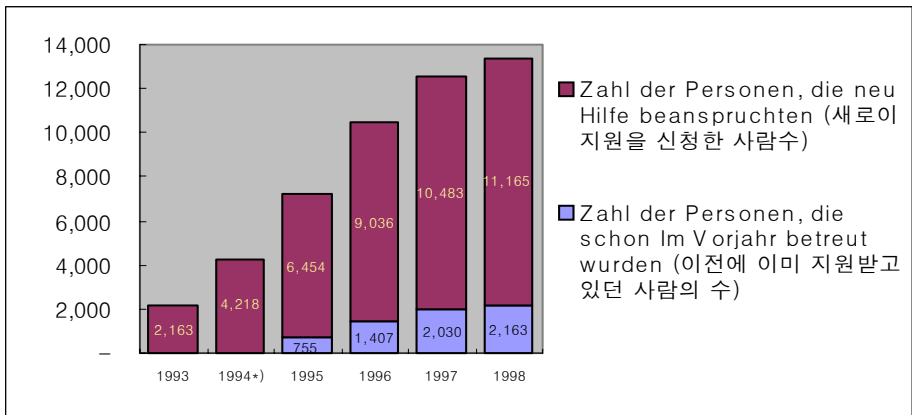
이러한 자문센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방법무부는 자문 받는 사람의 성별·나이·주거지·수치, 자문의 종류, 범죄의 종류, 경찰과의 관계, 지원활동의 범위 및 자문센터의 조직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자문 받는 사람의 수

아래의 표13)에서 보건대, 스위스의 경우 비록 시간적 표본이 1993-1999년까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자문센터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의

- 공동 자문센터(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자문센터(상담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가. 자문센터(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 사회, 재정 및 법률적 구조를 제공하고 중개한다.
 - 나. 자문센터(상담소)는 피해자구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자문센터(상담소)는 상당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구조한다.
- ④ 자문센터(상담소)는 구조행위와 제3자 긴급원조를 무상으로 한다. 자문기관(상담소)은 피해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비,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과 같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 ⑤ 피해자는 자신이 선택한 자문센터(상담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13) 1993-1998년간 자문센터를 통한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의 수



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그 숫자는 1997년 10,483명에서 1998년 11,165명에 달했다. 매해 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자문들을 고려한다면, 1997년에는 12,513명, 1998년에는 14,401명이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¹⁴⁾

거주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문의 수를 본다면¹⁵⁾, 1998년에 취리히(Zürich)와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거주자 10,000명당 28.1 내지 28 자문)이 1위이고, 뒤이어 베른(Bern)(25.2), 제네바(Genf)(23.2), 루체른(Luzern)(9.19) 그리고 바젤(Basel)(18.5) 지방자치단체가 따른다. 다른 Kanton(지방자치단체, 州를 의미)은 15.7로써 스위스 전체 자문의 수준이하에 있었다.¹⁶⁾

(3) 자문의 종류

대개 자문은 개인적으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읍발덴과 니트발덴 Kanton에서는 주로 피해자와 문서로 접하고 있고, 그 외의 Kanton에서는 직접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⁷⁾

14) 이 숫자는 실제로는 더 높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Freiburg에서는 45분 이상의 전화 상담만을 여기에 산입했기 때문이다.

15) 1997.12.31.의 평균 거주인구, 출처: 스위스 연방통계청(BFS).

16) (La Chaux-de-Fonds(NE): 15.4; Sion(VS): 10.7; Fribourg(FR): 10; St. Gallen(AR)/St. Gallen(AI)/St. Gallen(SG): 10; Zug(ZG): 9.1; Glarus(GL): 8.8; Lausanne(VD): 8.4; Solothurn, Grenchen, Olten, Breitenbach, Aarau, Basel(SO): 7.2; Chur, Samedan(GR): 6.6; Delémont(JU): 5.5; Belliyona, Locarno, Lubano, Mendrisio(TI): 5.3; Aarau(AG): 4.7; Goldau, Pfäffikon(SZ): 4.5; Weinfelden(TG): 4.4; Seedorf(UR): 3.6; Stans(NW): 1.9; Sarnen(OW): 1.3). 단지 읍발덴(Obwalden)과 니트발덴(Nidwalden), 2개의 Kanton만이 거주자 10,000명당 3개의 자문보다 더 적었다. 1996년처럼 거의 비슷한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Kanton들이 매우 상이한 수의 자문을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네바(Genf)(396,659명: 23.2)와 루체른(Luzern)(342,916명: 19) Kanton에 유효하고, 테신(Tessin)(305,588명: 5.3), 유라(Jura)(68,964명: 5.5.), 쾅(Zug)(95,098명: 9.1) Kanton과 비교되었고, 샤프하우젠(Schaffhausen)(73,741명: 28) Kanton과 비교되었다.

17) 취리히 Kanton에서 ‘온정의 손길’은 전화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적 자문을 실행하는 피해자 자문센터이다.

(4) 자문 받은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

아래 각주에서 보여지듯이, 자문센터에 문의했던 사람들의 약 75%는 여성(1995년: 78%; 1996년: 76%; 1997년: 76%, 1998년: 75.5%)이었고, 약 20%는 남성(1995년: 18%; 1996년: 21.5%; 1997년: 21.5%; 1998년: 22.5%)이었다. 위 경우 2 내지 4%는 성별이 수집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1995/96년처럼 1997/98년에도 6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약 3%). 지금까지처럼 자문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1/5 이상이다. 젊은 성인들(16-19세)의 비율은 10%보다 적은, 즉 약 9%에 달했다(1995/96년: 11%). 16-19세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명백하게 훨씬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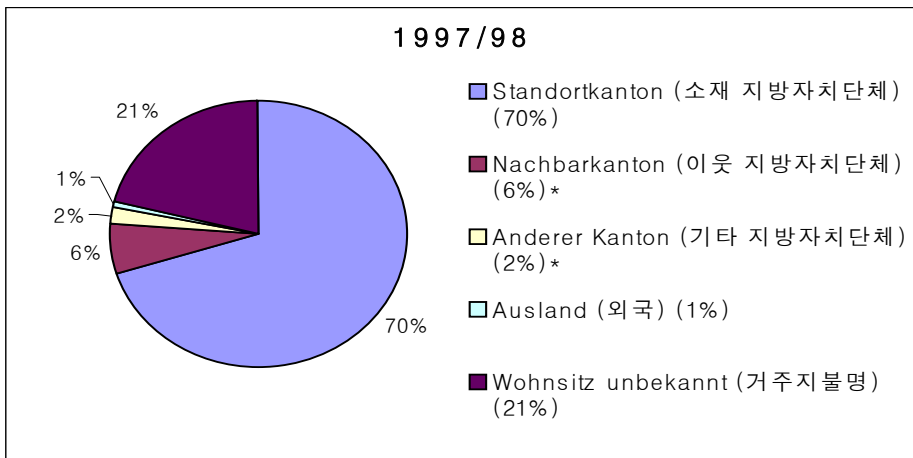
< 1997/98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자문받은 사람들의 수 >

	1997				1998				총 계
	여 성	남 성	성별 불상	총 계	여 성	남 성	성별 불상	총 계	
0-7세	494	244	7	745	463	267	7	737	1,482
8-15세	920	366	13	1,299	830	342	12	1,184	2,483
16-19세	803	174	16	993	793	170	15	978	1,971
20-59세	3,987	1,000	50	5,037	4,544	1,096	61	5,701	10,738
60세 이상	224	88	1	313	259	111	2	372	685
연령 불상	1,711	404	180	2,295	1,513	529	119	2,161	4,456
총 계	8,139	2,276	267	10,682	8,402	2,515	216	11,133	21,815

(5)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에 따른 조사.

새로이 자문 받은 사람들의 주거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1997/98년 보고기간에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 경우의 약 20% 정도는 주거지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남아있었다.

< 1997/98년 주거지에 따른 자문 받은 사람들의 분포 비율 >



아르가우(Aargau) Kanton은 이웃 Kanton들의 피해자와 다른 Kanton들의 피해자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피해자 모두는 ‘이웃 Kanton’들에 귀속되었다.

우리(Uri), 옵발덴(Obwalden), 글라루스(Glarus), 프리이부르크(Fribourg), 졸로투른(Solothurn), 바젤-도시/바젤-시골(Basel-Stadt/Basel-Landschaft), 성갈렌/마펜젤 내외호덴(St. Gallen/Appenzell Inner- und Ausserrhoden), 테신(Tessin), 바트(Waadt), 발리스(Wallis), 노이엔부르크(Neuenburg), 제네바(Genf), 유라(Jura) Kanton들에서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1998년에 약 90%였거나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8개의 기타 Kanton들에서는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67~85%였다(베른(BE): 79%, 니트발덴(NW): 71%, 쾅(ZG):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84%, 샤프하우젠(SH): 67%, 그라우빈덴(GR): 85%, TG: 83%, AG: 86%).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에서는 Kanton 밖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문을 구한 사람들의 비율이 특히 커서 1/3이상 이었다. 이때 대개는 이웃 Kanton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취리히, 루체른, 슈비츠 Kanton에서 주거지는 대개 수집되지 않았다. 이 Kanton들에서 분포 비율에 대한 확인은 그 때문에 불가능하다.

(6) 범죄행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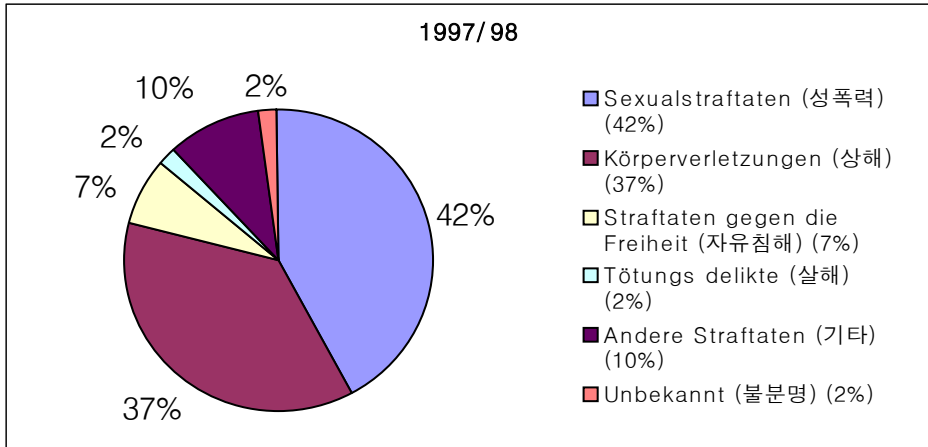
자문센터들은 1997년 10,652명, 1998년 11,268명을 대상으로 범죄행위의 종류에 대해 질문했다. 자문센터들은 그러나 항상 주된 범죄행위만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없다.

< 1993-1998년 범죄행위에 따라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18)

자문 받은 사람들의 수											범죄행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64	3.4%	110	2.6%	158	2.6%	239	3.0%	228	2.1%	313	2.8%	살인죄
731	39.1%	1,604	37.7%	1,921	32.3%	2,582	32.8%	3,863	36.3%	4,111	36.5%	상해죄
994	53.1%	1,629	38.2%	2,807	47.2%	3,493	44.4%	4,434	41.6%	4,560	40.6%	성범죄
83	4.4%	664	15.6%	353	6.0%	431	5.5%	709	6.7%	861	7.6%	자유침해에 대한 범죄
0		251	5.9%									다른 범죄행위18)*
				117	2.0%	161	2.1%	247	2.3%	294	2.6%	재산범죄
				22	0.4%	41	0.5%	3	0%	3	0%	인간질병의 유포
				359	6.0%	562	7.2%	849	8.0%	905	8.0%	다양한 범죄
				207	3.5%	354	4.5%	319	3.0%	221	2.0%	불상
1,872	100%	4,258	100%	5,944	100%	7,863	100%	10,652	100%	11,268	100%	총 계

18) “다른 범죄행위”라는 징표는 1993/94년 보고기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았

< 1997/98년 범죄행위에 따라 자문 받은 사람들의 분포 비율 >



1995/96년 보고기간처럼 1997/98년에 자문센터를 방문한 자들의 약 40%이상은 성범죄의 피해자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가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자문이었다.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자문센터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3/4이상이 성범죄나 상해죄의 피해자였다.

교통사고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1997/98년 보고시기에 상해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 중 35%는 교통사고와 관련 있는 범죄에 해당했다. 살인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 중 16%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이었다. 자문 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와 관련하여 교통사고피해자(상해죄와 살인죄)의 숫자를 본다면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1998년 모든 자문 받은 사람들의 7.2%가 교통사고로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해당했다(1997년: 6%; 1996년: 8.3; 1995년: 6.6%).

다. 재산범죄들은 신체적·성적·정신적 보존성을 침해하는 한 단지 피해자지원법에 상응한다.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1998년에는 상해죄나 살인죄와 관련하여 4,424명이 자문 받았다. 그 중에서 559명이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였다(1997년: 4,091명 중 637명).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해죄와 살인죄와 관련하여 자문 받은 사람들의 약 1/5가 교통사고피해자이거나 유가족이었다.

상해죄나 살인죄의 수와 관련하여 1998년엔 교통사고피해자의 수는 슈비츠(Schwyz)(48.8%), 루체른(Luzern)(32.9%), 성 갈렌/아펜젤 내외 호텐(St. Gallen/Appenzell Inner- und Ausserrhoden)(29%), 바젤-도시/바젤-시골(Basel-Stadt/Basel-Landschaft)(26.4%) Kanton에서 특히 높았다. 샤프하우젠(Schaffhausen)(2%), 테신(Tessin)(5.6%), 노이엔부르크(Neuenburg)(7.9%), 유라(Jura)(0%) Kanton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의 없다. 우리(Uri), 옵발덴(Obwalden), 니트발덴(Nidwalden) Kanton에서는 살인죄나 상해죄의 피해자의 수가 경미하여 분포비율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우리(UR): 4명중 1명, 옵발덴(OW): 1명중 1명, 니트발덴(NW): 5명중 3명).

(7) 경찰과의 관계

1998년 3,350건의 자문에서 예비조사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1997년: 3,032건; 1996년: 2,365건; 1995년: 1,641건). 1997년과 1998년을 거쳐 자문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의 29%가 예비조사나 형사절차와 연관되었다. 1995/96년의 보고기간에는 25%에 달했다.

경찰의 과제는 첫 심문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문센터에 대해 알려주고(피해자지원법 제6조 제1항) 자문센터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피해자지원법 제6조19) 제2항).

19) 제 6 조 (경찰과 조사기관의 임무)

- ① 경찰은 최초로 심문할 때 피해자에게 상담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경찰은 상담소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하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 전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성적 완결성에 관한 범죄피해자는 동성의 조사관과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설문지를 모두 채운 52개의 자문센터 중 48개의 자문센터들은 경찰의 피해자안내가 얼마나 빈번하게 피해자의 자문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만들었다. 자문센터의 절반(24개)이 경찰의 이름 제공에 근거하여 빈번하게(사건의 51-90%) 자문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 7개의 자문센터의 평가에 따르면 경찰의 안내가 심지어 항상(사건의 90% 이상) 자문으로 이어졌다. 그 외 16개의 중심 자문센터들은 경찰을 통한 이름 안내는 드물게 자문으로 이어진다(10-50%)는 입장이다. 기타 2개의 자문센터는 경찰의 안내가 거의 자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10% 이하)고 보고 있다.

동일 Kanton내에서 자문센터별로 표명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Kanton들 사이에서의 비교는 어렵다.

(8) 자문센터를 통한 지원활동의 범위

- ① 스위스에서는 기존 52개의 자문센터들이 다양한 지원활동의 빈도와 관련하여 설문에 답했다. 대부분의 자문센터들은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법적 지원(법률자문)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심리적 배려를 해줬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법적 대리 또는 심리치료적 행위는 단지 자문센터의 절반(26)에 의해서만 행해졌다고 한다. 의술적·의학적 지원의 거의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자문센터의 다수(30)는 이런 지원을 드물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이다.
- ② 물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센터의 다수(31)는 즉각적 지원을 재정적으로는 드물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장기간에 걸친 재정적 지원은 40개의 자문센터들 중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6개의 자문센터들은 빈번하게 또는 거의 항상, 위에 언급한 지원

이는 신문절차에도 적용된다.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했다고 밝힌다(예를 들어 보호조치, 숙소 제공, 전달/낮선 장소로의 이동, 브리핑, 전화상 1차 상담, 피해자지원법 외의 기타 배려).

- ③ 통상 자문센터들은 피해자지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적 지원, 사회적·심리적 배려는 대다수의 자문센터에 의해 빈번하게 수행되었다. 법적 대리, 심리치료, 의학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은 통상 제3자에 의해 보장되었다.

(9) 자문센터들의 조직(1997/98년의 보고기간)²⁰⁾

① 자문센터의 전문화 그리고 집중화²¹⁾

1997.7.1.이후 바젤(Basel)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자문센터가 구성되었다. 이 센터는 2개의 바젤(Basel) 정부의 위탁에 따라 트라이앵글연합에 의해 이뤄졌다. 그라우빈덴(Graubünden) Kanton은 1997년 자문센터 망을 9개에서 2개로 집중시켰다. 2개의 자문센터는 행정적으로는 지역적 사회업무에 연계되어 있으나, 전문적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행하고 있다. 1998.2.1. 이후 노이엔부르크(Neuenburg) Kanton에서는 자문센터의 과제가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 독립된 자문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이엔부르크(Neuenburg)와 La Chaux-de-Fonds Kanton에서 각각 사무실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20) 여러 Kanton(BS, BL 내지 AR, AI, SG)들에 의해 공통으로 구성된 자문센터들은 각각의 자문센터로서 유효하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자문센터들은 해당 Kanton의 자문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센터들은 다음과 같은 Kanton으로 구분된다: 13개의 Kanton에는 1개의 자문센터가 존재한다(UR, OW, NW, GL, SO, AR, AI, SG, AG, TG, VD, NE, GE); 2개의 Kanton에는 2개의 자문센터들이 존재한다(GR, SZ). 8개의 Kanton에는 3개의 자문센터들이 존재한다(LU, ZG, FR, BS, BL, SH, VS, JU). 테신(Tessin) Kanton은 4개, 베른(Bern) Kanton은 6개, 취리히(Zürich) Kanton은 10개의 자문센터를 설치했다.

21) 각 Kanton에서 설치한 자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는 부록에 첨부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또한 일부 자문센터들은 특정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피해자들의 숫자는 21명(1996년말)에서 26명으로 증대했고, 8개의 Kanton으로 나뉘어졌다(ZH, BE, LU, ZG, FR, BS, BL, SH). 여성과 소녀를 위한 특별기구, 남성과 소년을 위한 특별기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특별기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기구, 교통사고피해자를 위한 특별기구가 있다.

② 자문센터 전문화의 내용

2000년 초기에 어린이를 위한 자문센터처럼 여성과 소녀를 위한 12개의 자문센터들이 설치되었다(ZH, BE, LU, BS, BL, SH, FR Kanton; 이 중 4개의 Kanton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것(ZH, BE Kanton))이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자문센터는 하나(ZG)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자문센터는 9개(ZH, LU, ZG, FR, BS, BL, SH Kanton), 이 중 2개(ZH, LU Kanton)는 성적 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자문센터이다. 1개의 자문센터는 남성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고(SH Kanton), 또 다른 하나의 자문센터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남성, 청소년, 소년을 위해 특정되어 있다(ZH Kanton).

하나의 자문센터는 남성과 교통사고 피해자(FR Kanton), 또 다른 하나의 자문센터는 단지 교통사고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ZH Kanton). 미성년자를 위한 자문센터(ZH Kanton)처럼 성폭력 피해자로서 여성 또는 소녀를 위한 자문센터(BE Kanton)는 전문가층이나 관계인들을 지향한다.

③ 자문의 영역에서 기타 조직적 변화:

(i) 쪽(Zug) Kanton에서 1998.1.1에 “온정의 손길”과 함께 “Kanton Zug에서 피해자 지원 집행을 위한 피켓업무와 첫 자문에 해당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그럼으로써 이미 즉각적 출동권한이 있는 Kanton 경찰과 Kanton 병원 외에 부가적 피켓업무가 근무시간외에, 특히 주말에 제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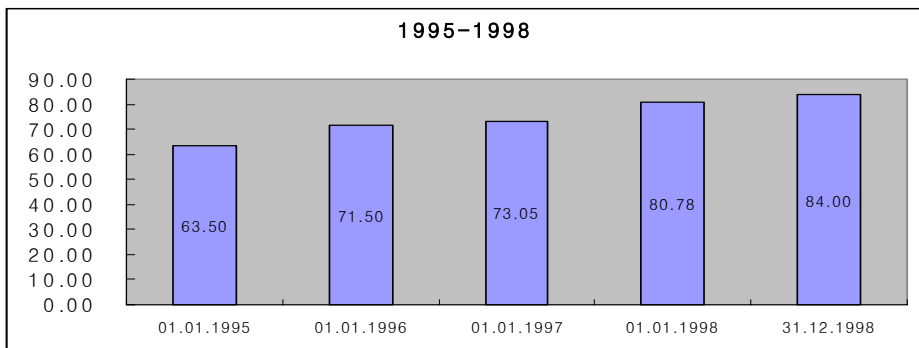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 (ii) 그라우빈덴(Graubünden) Kanton은 1998년 피해자지원전화번호에 대한 24시간 피켓 업무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단지 경미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평가는 1999년 말에 예상되었다.
- (iii) 발리스(Wallis) Kanton에서는 “Kanton내의 LAVI 위원회(Commission cantonale LAVI)”와 “발레 지역내의 일반 가정 중개위원회(Association valaisanne de mediation generale et familiale)(1997년), Kanton내 청소년 지원부서(Service cantonal d'aide a la jeunesse) (1998년)” 사이에서 협력을 위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 (iv) 바젤-시골(Basel-Landschaft), 바젤-도시(Basel-Stadt) Kanton은 상호 협력에 대해 원래 기한이 있던 협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위 2개 Kanton의 협력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 (v) 샤프하우젠(Schaffhausen) Kanton은 아동보호 전문그룹을 2년간의 연습기간 이후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운영한다.

(10) 자문센터의 인력구성

몇몇 Kanton에서 자문센터들의 인력은 증대(BL, AR, AI, SG, GR Kanton)되거나 지금까지의 “임시 지원”에서 정규적 예산으로 전환되었다(BE Kanton).²²⁾

22) 일자리 창출 (역자주 : 정규직)



Kanton(샤프하우젠(SH) 제외)들의 공포에 따르면 1998년 말 6개의 Kanton (Studen(UR), Goldau/Pfäffikon(SZ), Sarnen(OW), Stans(NW), Glarus (GL), Solothurn/Grenchen/Olten /Breitenbach/Aarau/Basel(SO))에서 피해자 자문센터의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인력들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2. 분석 결과

이상에서 자문센터를 통한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anton의 재정능력과 인구수에 따라 연방은 Kanton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둘째, 이런 예산 지원과 함께 스위스 자문센터간의 연계망도 증대되었고, 그럼으로써 자문센터의 무분별적인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사라지게 되었다.

셋째, 자문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제공된 지원에 만족하였다. 특히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과 소녀들이었고, 다수가 성범죄의 피해자였는데, 이는 위 법률 제정 당시의 주목표 그룹이었다.

넷째, 경찰을 통한 자문센터의 소개에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 즉 경찰을 통해 자문센터에 연결되는 피해자의 수치가 파악이 불명확했고,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경찰의 첫 심문에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찰과 자문센터간의 협력모델은 입법자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섯째, 즉시적 지원은 의료적 지원에서부터 심리학적 배려를 거쳐 법적 자문까지 모든 종류의 지원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자문센터를 통한 지원은 이러한 즉시적 지원에 미치지 못했다.

II. 스위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자문센터

이러한 평가에 대해 그 평가기간이 1993년도부터 1999년도에 이르는 이미 옛 것이 되어버린 자료들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한 스위스 자문센터의 역할과 그 독립적인 지위로의 분화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바로 이러한 분석, 특히 자세한 수치적인 표시 등이 입법평가의 분석적인 측면에서 설문조사의 한 방법론으로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이러한 연구분석의 결과를 한국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고찰해 본다.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1) 지원대책의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발전과 함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로서 생명을 잃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산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찰청과 법무연수원에서 5대 범죄·주요 경제범죄·강력범죄 등에 대해 각각 분석한 범죄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물론 교통범죄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문화의 발전 등으로 사망사고, 중·경상 사고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2007년)²³⁾ >

(단위 : 명)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발생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840	487,847	489,575
	검거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437	354,089	354,131
살인	발생	963	976	941	1,051	957	998	1,084	1,061	1,074
	검거	975	993	955	1,076	994	1,038	1,041	1,023	1,055
강도	발생	5,516	4,972	5,461	5,692	5,906	7,292	5,834	5,172	4,832
	검거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4,941	4,021	4,071

23) 경찰청, 2007 경찰백서, 122면.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강 간	발 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9	7,323	8,759
	검 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2	6,443	7,937
절 도	발 생	91,438	89,395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93	188,960	192,808
	검 거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70	80,785	82,491
폭 력	발 생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570	285,331	282,102
	검 거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63	261,817	258,577

<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07년)²⁴⁾ >

구 분	년 도	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중 수죄	신용 경매죄	통화유가 증권위조	부수법 위반
발 생 수	'01	217,971	169,553	20,791	3,858	290	4,649	1,368	17,462
	'02	226,948	183,327	19,600	3,386	269	4,799	1,220	14,347
	'03	285,162	231,951	22,286	4,416	231	5,245	1,451	19,582
	'04	310,196	239,684	25,696	5,779	377	6,270	1,948	30,442
	'05	246,956	189,063	23,432	4,541	126	7,243	3,141	19,410
	'06	262,989	202,283	24,389	4,807	241	9,193	5,695	16,381
검 거 수	'01	181,846	140,744	18,717	3,790	297	4,522	1,011	12,765
	'02	190,322	152,743	18,208	3,402	272	4,728	797	10,172
	'03	231,165	171,056	18,862	4,098	233	5,145	886	12,885
	'04	239,484	184,418	21,274	5,371	373	6,069	1,070	20,909
	'05	154,749	154,749	20,227	4,053	126	7,057	1,237	14,075
	'06	209,499	162,340	21,060	4,378	231	8,945	1,638	10,907

24) 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8.jsp(2007년 11월 15일 검색).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 전체 범죄의 발생 · 검거 현황(2006년)²⁵⁾ >

區分 年度	發生件數	檢舉件數	檢舉率 (%)	檢舉人員	總人口 (單位:1,000名)	人口比
1975	387,207	335,944	86.8	462,908	35,281	1,097
1976	504,630	450,059	89.2	609,177	35,849	1,408
1977	506,545	448,168	88.5	600,197	36,412	1,391
1978	513,165	438,265	85.4	589,008	36,969	1,388
1979	555,793	491,567	88.4	651,998	37,534	1,481
1980	595,277	475,353	79.9	697,629	38,124	1,561
1981	625,934	549,532	87.8	734,981	38,723	1,616
1982	658,371	575,029	87.3	784,564	39,326	1,674
1983	786,553	656,204	83.4	859,097	39,910	1,971
1984	803,792	693,387	86.3	888,105	40,406	1,989
1985	810,416	693,270	85.5	885,765	40,806	1,986
1986	809,660	704,874	87.0	902,895	41,184	1,966
1987	946,390	825,601	87.2	1,054,407	41,575	2,276
1988	968,965	856,517	88.4	1,114,468	41,975	2,308
1989	1,073,997	949,308	88.4	1,179,156	42,380	2,534
1990	1,171,380	1,047,760	89.4	1,326,775	42,793	2,737
1991	1,230,118	1,130,262	91.9	1,418,168	43,268	2,843
1992	1,241,102	1,135,146	91.5	1,451,942	43,663	2,842
1993	1,356,914	1,298,637	95.7	1,656,113	44,056	3,080
1994	1,373,407	1,246,582	90.8	1,582,428	44,453	3,090
1995	1,399,085	1,269,375	90.7	1,599,930	44,850	3,119
1996	1,494,846	1,358,982	90.9	1,681,321	45,248	3,304
1997	1,588,613	1,452,097	91.4	1,802,720	45,991	3,454
1998	1,765,887	1,632,678	92.5	2,010,814	46,430	3,803
1999	1,732,522	1,651,896	95.3	2,081,797	46,858	3,697
2000	1,867,882	1,664,441	89.1	2,126,258	47,274	3,951
2001	1,985,980	1,763,346	88.8	2,234,283	47,343	4,135
2002	1,977,665	1,826,852	92.4	2,267,557	47,640	4,076
2003	2,004,329	1,776,049	88.6	2,184,975	47,925	4,182
2004	2,080,901	1,862,234	89.4	1,565,365	48,082	4,328
2005	1,893,896	1,624,522	85.7	1,897,093	48,294	3,922

2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28면.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2006년)²⁶⁾ >

年度 區分	發 生		檢 舉		檢舉率 (%)
	件 數	人口比	件 數	人 員	
1975	5,284	15.0	5,039	6,911	95.4
1976	5,341	14.9	5,245	7,163	98.2
1977	5,303	14.6	5,121	6,888	96.6
1978	5,043	13.6	4,725	6,561	93.7
1979	5,755	15.3	5,441	8,055	94.5
1980	7,259	19.0	7,090	10,380	97.7
1981	8,125	21.0	7,901	12,080	97.2
1982	8,763	22.3	8,653	13,486	98.7
1983	8,724	21.9	8,692	13,159	99.6
1984	9,401	23.3	6,995	10,393	74.4
1985	9,664	23.7	9,255	14,404	95.8
1986	8,243	21.5	8,108	12,412	98.3
1987	9,342	22.5	9,004	13,941	96.4
1988	9,298	22.2	8,842	14,320	95.1
1989	10,412	24.6	9,372	14,004	90.1
1990	11,440	26.7	10,783	17,144	94.3
1991	9,619	22.2	9,252	14,263	96.2
1992	9,675	22.2	9,784	14,963	101.1
1993	11,639	26.4	13,407	20,613	115.2
1994	13,304	29.9	13,159	18,915	98.9
1995	10,852	24.2	10,515	15,704	96.9
1996	12,155	26.9	11,547	15,229	95.0
1997	12,967	28.2	12,279	16,796	94.7
1998	15,416	32.9	14,988	21,385	97.2
1999	15,633	33.4	15,353	21,101	98.2
2000	17,780	37.6	16,003	21,422	120.4
2001	18,480	39.0	16,387	21,413	88.6
2002	17,759	36.6	17,208	25,321	96.9
2003	20,416	42.6	19,367	29,796	94.9
2004	19,539	40.5	17,752	19,110	90.9
2005	19,941	41.3	17,059	20,082	85.5

2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50면.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2006년)²⁷⁾ >

區分 年度	合 計	殺 人	強 盜	強 姦 (性暴力포함)	放 火
1975	5,284	566	1,588	2,794	336
1976	5,341	556	1,380	3,087	318
1977	5,303	506	1,210	3,244	343
1978	5,043	485	1,021	3,207	330
1979	5,755	458	1,315	3,621	361
1980	7,259	536	2,374	3,977	372
1981	8,125	625	2,504	4,568	428
1982	8,763	538	2,274	5,459	492
1983	8,724	518	2,498	5,244	464
1984	9,401	581	2,834	5,482	504
1985	9,664	600	3,135	5,453	476
1986	8,860	617	2,695	5,002	546
1987	9,342	653	3,102	5,034	553
1988	9,298	601	3,446	4,658	593
1989	10,412	578	4,085	5,102	647
1990	11,440	666	4,195	5,519	1,060
1991	9,619	630	2,766	5,175	1,048
1992	9,675	615	2,549	5,447	1,064
1993	11,639	806	2,876	7,051	906
1994	13,304	705	4,469	7,415	715
1995	10,852	646	3,414	6,174	618
1996	12,155	690	3,586	7,158	721
1997	12,967	789	4,282	7,120	776
1998	15,416	966	5,407	7,886	1,157
1999	15,633	984	4,712	8,830	1,107
2000	17,780	964	5,349	10,189	1,278
2001	18,480	1,064	5,546	10,446	1,375
2002	17,759	983	5,953	9,435	1,388
2003	20,416	1,011	7,327	10,365	1,713
2004	19,539	1,082	5,762	11,105	1,590
2005	19,941	1,091	5,266	11,757	1,827

2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52면.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05년)²⁸⁾ >

< 남 >

年 齡 \ 罪 名	計	殺 人	強 盜	放 火	強 姦 (性暴力포함)
計	3,736	502	1,907	884	433
6세 이하	30	14	3	2	11
12세 이하	52	3	22	-	27
15세 이하	85	6	581	1	20
20세 이하	338	19	249	11	59
30세 이하	651	57	408	69	117
40세 이하	810	117	377	197	119
50세 이하	973	180	442	294	57
60세 이하	507	69	225	201	12
60세 초과	290	47	123	109	11

< 여 >

年 齡 \ 罪 名	計	殺 人	強 盜	放 火	強 姦 (性暴力포함)
計	4,847	504	2,945	618	10,780
6세 이하	189	11	1	-	177
12세 이하	567	10	13	-	544
15세 이하	540	4	31	2	503
20세 이하	2,443	15	283	8	2,137
30세 이하	5,297	70	972	46	4,209
40세 이하	2,377	124	603	154	1,496
50세 이하	2,245	160	660	217	1,208
60세 이하	694	57	243	99	295
60세 초과	495	53	139	92	211

2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63면.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 교통범죄의 인적 피해정도별 현황(2001년~2005년)²⁹⁾ >

被 害 内 容 年度	發 生 件 數	死 亡 者 數	負 傷 者 數			
			計	重 傷	輕 傷	負 傷 申 告
2001	260,579	8,079	386,539 (100)	176,318 (52.8)	204,399 (52.8)	5,822 (1.5)
2002	230,953	7,090	348,184 (100)	154,453 (44.4)	189,712 (54.5)	4,019 (1.2)
2003	240,832	7,212	376,503 (100)	173,730 (46.1)	198,687 (52.8)	4,086 (1.1)
2004	220,755	6,563	346,987 (100)	152,141 (43.8)	190,469 (54.9)	4,377 (1.3)
2005	214,161	6,376	342,233 (100)	147,279 (43.0)	188,934 (55.2)	6,020 (1.8)

< 교통사고 피해자 연령(2005년)³⁰⁾ >

年 齡 區 分	計	14歲以下	15~20	21~30	31~40
計	348,609 (100)	25,598 (7.3)	21,041 (6.0)	73,540 (21.1)	77,841 (22.3)
死 亡	6,376 (100)	284 (4.5)	273 (4.3)	735 (11.5)	871 (13.7)
負 傷	342,233 (100)	25,314 (7.4)	20,768 (6.1)	72,805 (21.3)	76,970 (22.5)

年 齡 區 分	41~50	51~60	61~70	71歲 以上	不 明
計	77,334 (22.2)	40,449 (11.6)	22,924 (6.6)	9,870 (2.8)	12 (0.0)
死 亡	1,147 (18.0)	909 (14.3)	1,147 (18.0)	1,004 (15.7)	6 (0.1)
負 傷	76,187 (22.3)	39,540 (11.6)	21,777 (6.4)	8,866 (2.6)	6 (0.0)

2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72면: () 안은 분포백분율을 의미하고, 중상은 진단 3주 이상, 경상은 진단 5일 이하를 말한다.

3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73면: () 안은 분포백분율을 의미한다.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 그 자체로 인한 피해와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상처 치유,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이 부족하고, 소송제기시 과도한 소송비용과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및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언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보호·지원체계의 미흡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전반적으로 미비하였다.

(2) 범죄피해자대책의 연혁³¹⁾

1970년대 말까지도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먼저 1981년에 배상명령제도가 시행되었다. 1981. 3.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에서 형법범 중의 일정 범죄(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헌법 개정을 기화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로 보장을 하게 되었다. 이 헌법을 기초로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31)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2006년, 진리탐구, 150면 이하 참조.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일정한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유족구조금 1천만원, 장애구조금 300~600만원)되었고,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전통적인 피해자보호 관련규정으로서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제도,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제도 등을 들 수 있겠으나, 1987년 10월 헌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었고³²⁾, 1995년 12월에 공포되어 1997년 1월에 시행하게 된 제7차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에서는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1997.11),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12), 「성폭력

32) 第294條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개정 2007.6.1>)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本條新設 1987.11.28]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8), 『여성발전기본법』(1998.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8.8), 『청소년보호법』(1998.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1.5) 등의 법률들이 차례로 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2005년 12월에 개정하면서 배상명령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³³⁾,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신설하여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³⁴⁾. 이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 재산범죄,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당사자간의 화해가 효율적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절차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합리적, 평화적 해결을 통하여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분쟁해결 능력을 증대하고, ‘응보와 제재’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 조정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재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효율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형사사법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³⁵⁾

이후 우리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지원하는 원칙과 종합계획을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산발적으로 규정된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며 정부 내에 종합적 기본 정책을 실시, 추진하기 위한

3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3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35) 법무부 구조지원과 구성 ; 2003. 9.경부터 2006. 7.경까지 전국 55개 검찰청 소재지에 설립, 민간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협의체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회의 등을 설치하는 취지의 입법을 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자자문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5조)이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 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안 제17조)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 끝에 2005년 12월 23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등을 규정하였으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심의기구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각 중앙 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시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5장 벌칙 등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편에서는 법률의 목적, 기본이념, 범죄피해자에 관한 개념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법률의 목적에서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①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②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 ③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3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자보호도록”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자의 범위를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와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자까지 포함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념이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개별법에 산재한 피해자의 개념보다 확대된 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개별법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이념과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반면, 각 개별법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이념과 시책방향을 이어받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개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1) 개 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범죄피해자 관련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고, 주된 집행은 형사사법기관과 민간법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사법기관과 민간 법인을 다루며, 형사사법기관으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제시한다. 스위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 조치는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다분화, 중복화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피해자보호제도를 개관하고자 한다.

(2) 법무부의 피해자 구조제도³⁶⁾

법무부의 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및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보장하여 범죄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써 범죄피해자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 및 조사와 연구 및 홍보활동 강화,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손실복구 지원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외에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적 치유 및 지원이 미비하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도 과도한 소송비용과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적임

36) 법무부의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2006년 12월 4일 작성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실복구 지원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체계 구축

범죄발생 직후부터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상담,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현장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련의 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처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체계는 더욱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 1,000만원, 중장해의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각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할 경우 피해자지원정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구조요건의 완화, 구조금의 종류 확대 및 구조금액의 상향조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

전국 55개 검찰청과 경찰청,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민간 범죄피해자 지

원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위 민간 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체제를 구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④ 의료 및 보건서비스 제공

범죄발생 직후 지역격차가 없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조치를 취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해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의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나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후 범죄와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 고통 등을 입는 2차적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 안내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⑤ 법률구조 지원

범죄피해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법적 소송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용과 절차상의 무지로 인하여 심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손해배상 청구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제도 역시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 전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고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제도와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⑥ 취업 알선

범죄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 공공기관에의 우선 고용 등 시범고용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지원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하고, 노동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자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채용, 배치 및 노동조건 등 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상세한 취업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2) 형사절차의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만큼 보장받지 못했다. 즉, 피의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위 절차에서 소외되어 사건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받거나 동법 제259조에 의거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형사절차에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반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진술을 강요당할 수 있고,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신문과정에서, 예를 들어 대질신문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추궁의 형식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제2의 피해를 볼 우려까지 존재한다.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하지 않음으로써 증인선서나 위증처벌의 우려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신문 회피나 신문내용의 제한 등 신문방식을 도입하거나 비디오 중계방식을 통해 피의자와의 대면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재판공개주의 원칙과 피해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적

법익이 우월한 경우에만 재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②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판기록 열람 및 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사관련사항·공판진행사항·형집행사항 등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분 결과에 대해 범죄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범죄피해자는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또는 동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2차적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신의 신변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신변의 안전 보장

범죄피해자의 일시적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보호시설, 민간보호소 등에 보호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가해자가 체포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되기 전까지,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시 재위해와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이나 특별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목격자,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보완·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재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심정을 가해자에게 전달하여 이해시키거나 피해자의 신변안전확보를 위해 가해자에게 준수사항을 교육시키고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② 피해자 정보보호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이 노출되어 신변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명 사용, 기소장 낭독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낭독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외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와 홍보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관계인의 이해 부족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사 또는 재판의 객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써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이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수사기관, 교정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범죄피해자를 대면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및 승진시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민간 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하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참여식 수업 등 학교교육을 통해 범죄피해 예방교육이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②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 및 연구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처해 있는 상황과 심리 상태 등 실태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범죄피해자학회나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와 회복에 대한 연구와 의료전문가를 통한 피해 조사 및 치료법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③ 홍보활동 전개

범죄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홍보하여 2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를 위해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5)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로는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 및 청소년(아동) 보호 및 수용시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설(쉼터), 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관련 자문·상담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민간기구들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민간기구들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위 민간기구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자산·인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등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에 대해 홍보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단체의 범위, 지원받는 사무의 범위, 지원의 방법 등 종합적인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한다. 그 외에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국가예산이 지원되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와 감독을 이행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접수 등을 활용한다.

②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단체가 자체 조달하거나 사회공공단체로부터의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지원 예산은 2006년 10억원,

2007년 9억 4,400만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구조기금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많은 민간단체에 위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자산, 사업운영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수령 실적 등을 참작하여 배분하되, 보조금 사용내역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중 일부는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에서 시행하거나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다수의 사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될 사안들이다.

(3) 검찰청의 피해자 구조제도

갑작스런 범죄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사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여러 가지 상담과 사건의 진행 절차나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에서 피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검찰청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검사 및 지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 배치된 현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실 운영실태

① 검찰청 내 피해자 지원실

검찰청에서는 각종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회복을 도와주기 위하여 검찰청 종합민원실 내에 범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죄피해자지원실을 두고 있다. 전국의 모든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부담이나 불안을 덜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검찰청 안에 □□피해자지원실□□과 □□피해자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보호 및 지원대상

-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신고자 및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보호 및 지원내용

- 사건처리의 경과, 재판결과, 가해자의 수형사실 및 출소사실에 관한 통지 등 피해사건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의 제공
-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 등 형사소송절차 안내
- 수사기관 또는 법정 출석시 검찰직원 동행 등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의 조사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구조방법 안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안내

2)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의 구체적인 업무

- ① 검찰청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재판은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범인이 언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지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 ②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재판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상담.

- ③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경험이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검찰청 직원이 직접 법정까지 함께 가서 안내하고 도와 줌.
- ④ 민간의 피해자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소개와 매개.

(4) 경찰청

1)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감사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등 각 기능별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전체 사건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진정이나 제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사기능에 설치하자는 결정을 내려 기존 수사국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인권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인권보호센터’로 하였다.

① 인권보호센터의 구성

인권보호센터는 인권보호계와 범죄피해자대책계로 구성되어 있다.

- i) 인권보호계는 경찰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접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외부 통제기구인 인권수호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인권단체와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급 경찰관서의 인권시책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평가·조치

I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하고, 유치장 시설 및 관련 법령·제도를 무죄추정 원칙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 친인권적으로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ii) 범죄피해자대책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방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선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서포터 활동을 분석·지도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각급 경찰관서 및 경찰교육기관의 인권교육을 기획·실시하고 있다.

②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업무

- i) 경찰업무과정의 인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의 기획
- ii)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 iii) 인권침해신고, 상담접수, 조사 및 조치
- iv)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v)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 vi) 인권수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단 운영 지도
- vii)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 viii) 인권시책 이행 실태 확인, 모니터링, 평가
- ix)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①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분석

경찰청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영역은 주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성폭력피해자들은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외에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2차 피해’란 성폭력 등 충격적인 피해를 당하여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가 병원, 상담소, 경찰·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의 반복진술·성적 수치심·신분노출 등 2중·3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1차적인 원래 피해 이외의 새로운 피해를 말한다. 경찰청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시방안을 모색한 사례가 있다.

② 2차 피해 발생원인분석

위에서 설명한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위해 병원·경찰서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건처리 과정의 2차 피해 사례 >

병원(치료) → 상담소(상담)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법원(증언)

i) 병원(치료)

병원 응급실 등에서 일반 환자와 섞여 장시간 대기하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피해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내다 지쳐 버린다. 때로는 사후 법정 증인 출석 등을 우려하거나, 증거채취 등을 기피하는 바람에 더 큰 상처를 받는 사례도 있다.

ii) 상담소(상담)

민·형사상의 사건처리나 심리적 안정 등 조언을 받기 위해 관련 상담소 등을 찾아 피해사실을 진술한다.

iii) 경찰(수사)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며, 가해자 혐의 부인시 때로는 두 번 다시 마주하기 싫은 가해자와 대면하여 대질수사를 받기도 한다.

I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iv) 검찰(수사)

사안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여 또 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v) 법원(증언)

정식재판시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 한번 피해사실을 증언한다.

이렇게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 차례 반복 진술해야 하며, 그것도 대부분 남성들 앞에서 진술하게 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위축되고, 혹시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의 신분, 피해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노심초사하며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② 경찰청 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 i)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한 곳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등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 ii) 특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찰관서나 제3의 장소보다는 치료를 위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병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3)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경찰병원에서의 ‘성폭력 의료지원센터’ 설치 (ONE-STOP지원센터)

i) 예산확보

경찰병원에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2005년 3월부터 예비비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관계부처 반응은 천재지변의 상황도 아닌데 예비비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한 끝에 어렵게 학교폭력 예비비 1억 7천만 원을 센터 설치비 명목으로 확보하였다.

ii) 경찰병원의 협조

경찰병원은 기존 성폭력의료지원센터의 형식적인 운영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다가, 새로이 ‘여경이 24시간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경찰병원측에 실질적 의미의 성폭력 의료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iii) 여성경찰관 선발, 교육

이에 지원센터를 위하여 상담 및 수사를 담당할 여성경찰관 7명을 선발하여, 진술녹화관 교육 등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iv) 경찰병원 ONE-STOP지원센터 개소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국내 최초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찰이 범인 검거 위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로 전환하여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경찰에 대한 인식변경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v) 전국 확대설치

관련부처 협의와 관련 시민단체의 설득, 그리고 예산과 장소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국적인 확대를 시도하였다.

② 경찰청의 ‘ONE-STOP지원센터 운영체계

경찰청의 ‘ONE-STOP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i) 전문상담사의 상담지원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가 당시의 충격·자책감·분노 등을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한편, 피해자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의 와해·해체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i) 전담의료진의 무료진료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의사 및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된, 센터 내 별도 진료실에서 무료 진료하는 방식으로 비밀유지 및 성적 수치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iii) 여경전담 진술녹화 등 수사지원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면서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작성 등 조사활동과 함께 관할 지방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가해자 조기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증거채취를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 작성은 범인의 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iv) 무료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단(경찰병원) 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v) 경찰청의 ONE-STOP지원센터 현황

설치 현황(2005년 5월 ~ 200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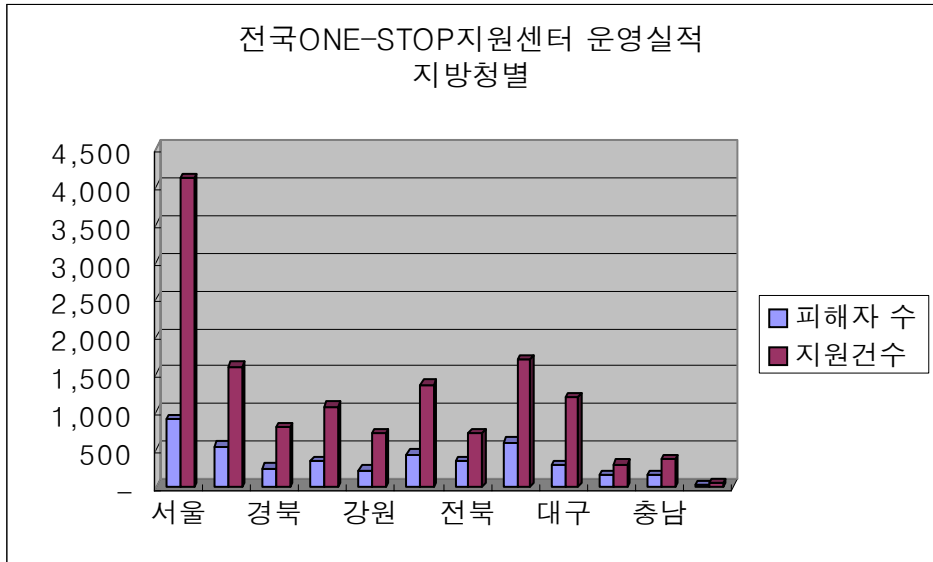
지방청	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전남	충남	경기	경남	제주
의료기관		경찰병원	부산의료원	안동의료원	동강병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전북대병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개소일		05.8.31	05.12.22	06.1.12	06.1.25	06.2.2	06.2.8	06.2.28	06.3.31	06.5.9	06.9.4	06.9.7	06.11.10	06.12.1	06.12.8
상주인원	계	100	8	7	7	6	7	7	7	7	8	8	7	7	7
	경찰관	49	7	4	3	3	3	3	3	3	4	4	3	3	3
	상담행정	40	1	3	3	3	3	3	3	3	3	3	3	3	3
	간호사	11			1		1	1	1	1	1	1	1	1	1
센터면적	-	38평	31평	28평	24평	23평	24평	20평	20평	52평	40평	42평	25평	36평	26평

운영실적(각 개소일 ~ '06.11.30)

- '06년 11월말 현재까지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4,368명에게 상담·진료·수사 등 14,026건의 서비스 지원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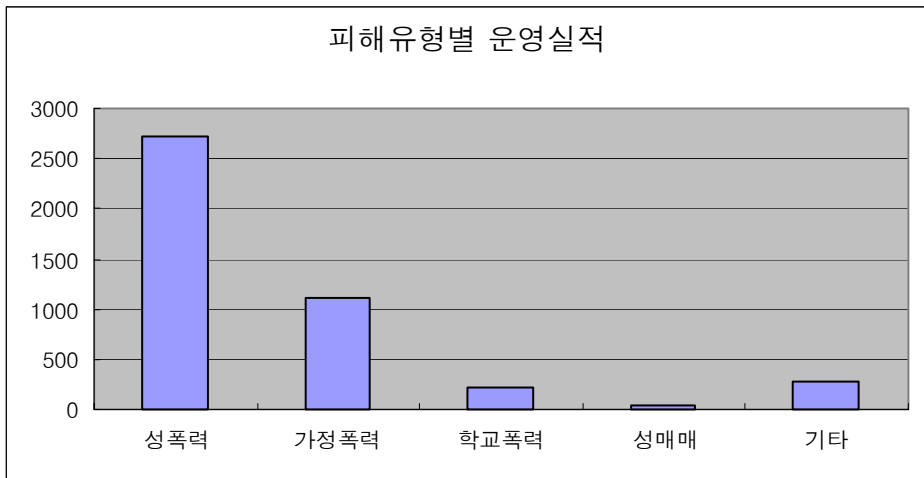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인천	대구	전남	충남	경기	경남	제주
피해자 수	4,368	912	546	258	353	235	443	347	601	302	169	172	30		
지원건 수	14,026	4,098	1,599	795	1,077	723	1,366	723	1,701	1,188	311	38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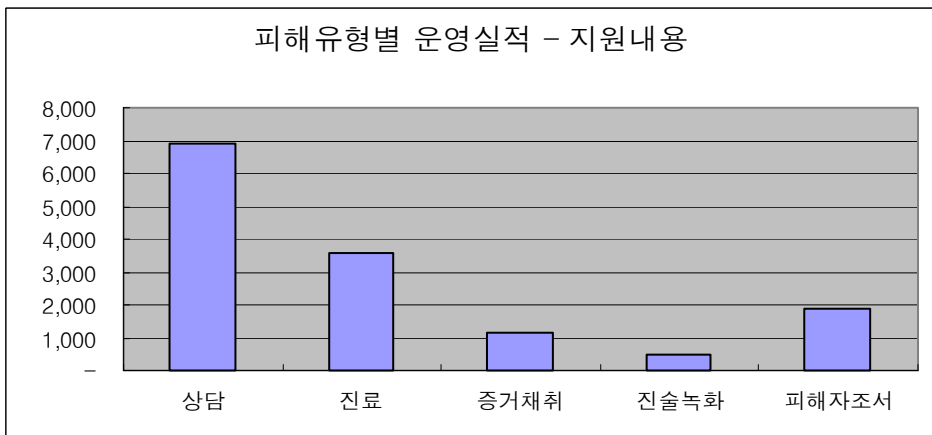
□ 지방청별 표

○ 피해유형별

피해자(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4,368 (100%)	2,723 (62.3%)	1,105 (25.3%)	219 (5.0%)	37 (0.9%)	284 (6.5%)	14,026 (100%)	6,915 (49.3%)	3,578 (25.5%)	1,142 (8.2%)	495 (3.5%)	1,896 (13.5%)



□ 피해유형별 운영실적 - 지원내용



vi) 정부부처 차원에서의 부처 지원내용

- 경찰청 : 여성경찰관 24시간 배치, 수사 지원
- 여성가족부 : 센터 설치·운영비 등 예산 지원 (약 22억원)
- 보건복지부(의료기관) : 장소제공 및 의료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7억원)

(5) 민간 범죄피해자 보호법인

1) 개 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장 제1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으로서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동법을 기본법으로 하지만, 동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응급진료 및 치료
- 마.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의 운영
-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② 법인의 임·직원 중 10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변호사·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의료 등 해당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 나.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이러한 법조문에 근거한 대표적인 민간 범죄피해자 보호법인으로서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가 설립되었다.

3)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활동내용

i) 전화상담

- 위기상황 전화, 피해자나 가족, 유족에 대한 긴급 전화상담
- 피해 후 정신적 지원

III.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 피해 후 단기, 장기 전화 상담

ii) 면접상담

- 피해자, 가족, 유족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법률, 의료, 상담) 연계
- 출장 상담 서비스

iii) 형사사법

-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병원, 경찰, 검찰, 법원의 동행
- 형사절차의 정보제공
- 피해보상, 배상 절차의 정보제공
- 기타 형사사법제도에 필요한 정보제공

iv) 의료지원

- 병원의 진료, 치료 연계
- 병원동행
-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위원 연계

v) 기타 학술활동

- 피해자학에 관한 조사, 연구
- 피해자학에 관한 교육
- 피해자 활동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상담원 양성
- 외국의 자료를 연구, 번역 및 출판
- 대외적인 정보교환 및 교류추진
- 국제세미나 참가 및 발표

3. 정부기관별 비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지원센터
보호지원 활동내용	*피해상담. *신변보호 *형사절차 참여보장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알선 *형사조정	* 피해사건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의 제공 (사건처리의 경과, 재판결과, 가해자의 수형사실 및 출소사실에 관한 통지 등) * 형사소송절차 안내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 등) *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수사기관 또는 법정 출석시 검찰직원 동행 등)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구조방법 안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안내)	*경찰업무과정의 인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의 기획 *인권시책의 종합 및 조정 *인권침해사례 조사 및 조치 *인권교육·홍보 계획 수립, 시행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의 의견제시 *인권수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시민 인권보호단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인권시책실행, 모니터링, 평가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전문상담사의 상담지원 2. 전담의료진의 무료진료 3. 여경전담 진술 녹화 등 수사지원 4. 무료 법률지원
보호 및 지원 대상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고자 및 참고인 또는 증인 등 보복의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 부분의 범죄 피해자 보호 영역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운영 기관		전국의 모든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부담이나 불안을 덜고 피해자를 지원을 위하여 검찰청 안에 □□피해자 지원실□□과 □□피해자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센터 (①인권보호계, (경정1, 경감1, 경위3) ②범죄피해자대책계 (경정1, 경감1, 경위3)	*경찰청 내의 여성·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지원센터
--	-----	-----	-----	--------------------

IV.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³⁷⁾

< 연도별 예정 재정소요추계표 >

(단위 : 억원)

37) 2005년 8월 31일, 정부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세 입	-	-	-	-	-	-
세 출	10.4	10.7	11	11.3	11.8	55.2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	0.5	0.6	0.6	0.6	0.6	2.9
인 건 비 (보조금)	4.4	4.5	4.6	4.7	5.1	23.3
시 설 비 (보조금)	5.5	-	-	-	-	5.5
사 업 비 (보조금)	-	5.6	5.8	6.0	6.1	23.5
세출 재원조치	10.4	10.7	11	11.3	11.8	55.2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10.4	10.7	11	11.3	11.8	55.2
○ 일반회계	10.4	10.7	11	11.3	11.8	55.2
○ 특별회계	-	-	-	-	-	-
○ 기 금	-	-	-	-	-	-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	-	-	-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	-	-

【참고자료 1】

기초 시설비(2006년)

구분	내역	소요액(천원)
자산취득비	책상 250,000원*3개	750
	사무용 의자 150,000원*3개	450
	개인용 서랍 130,000원*3개	390
	키폰 전화기 250,000원*3개	750
	책장 200,000원*1개	200
	서류보관 캐비닛 180,000원*1개	180
	복사기 6,000,000원*1개	6,000
	모사전송기 1,200,000원*1개	1,200
	레이저 프린터 1,000,000원*1개	1,000
	개인용 컴퓨터 1,300,000원*3개	3,900
	탁자 등 집기 2,000,000원	2,000
합 계		16,820
1개소 보조금 16,820천원*0.6 = 10,092천원		
시설비 보조금 총액 10,092천원*55개소= 555,060천원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참고자료 2】

인건비 연도별 보조액(2006 ~ 2010년)

연 도	내 역	소요액(천원)
2006	660,000원(생활복지사 1호봉)*55명*12개월	435,600
2007	679,000원(생활복지사 2호봉)*55명*12개월	448,140
2008	697,000원(생활복지사 3호봉)*55명*12개월	460,020
2009	715,000원(생활복지사 4호봉)*55명*12개월	471,900
2010	767,000원(생활복지사 5호봉)*55명*12개월	506,220

【참고자료 3】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비(2007년 이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응급 구호비	30,000원*20건*55개소*12개월*0.5	198,000
상담비	30,000원*30건*55개소*12개월*0.5	297,000
수사기관등 동행지원	5,000원*20건*55개소*12개월	66,000
총 계		561,000

【참고자료 4】

범죄피해자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의 예산비용 (2006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연구용역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30,000천원*1건	30,000
위원회 운영	운영수당 70,000원*10명*4회	2,800
	업무추진비 30,000원*20명*4회	2,400
교육비 등	범죄피해담당자 교육 105,260원*55명*2회	11,579
	교육 담당 강사료 200,000원*7명*2회	2,800
	교육교재(100쪽, 300부) 1,350,000원	1,350
	범죄피해자주간 행사비 3,310,000원*1회	3,310
총 계		54,239

이상에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민간 범인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보호 및 지원활동 실적처럼 법무부와 검찰, 민간 자문센터의 실적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검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은 주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로 공소제기 이후의 형사절차에서의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에 거쳐 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중복 지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자료 수집의 한계에 부딪혀 조사할 수 없었음을 여기에서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의 시행계획을 보면 실제로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한계가 있고, 다수의 제도는 검토중이거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한 제도들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밑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검찰청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와 경찰청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가 중복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형사소추라는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는 하나, 두 기관의 업무는 엄밀히 고찰해 볼 때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위험예방과 범죄진압이 주 임무이나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영역보다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검찰청, 경찰청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와 민간 단체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자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1. 국무총리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작성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나 사항들이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 많은 정부기관들의 협조를 득해야만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 행정부 내에서 각 부처들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고 한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해 명령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수용되는 원리이다. 범죄피해자를 다루는 주 기관이 법무부이므로 법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처들이 이에 협조하는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부내 부처들을 통할, 지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리는 정부업무평가를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하나의 부처에서 업무를 심사·분석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및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이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을 때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원 증대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의 갈등,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의 갈등, 성폭력·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의 갈등 등을 줄일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고, 이는 법무부라는 행정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 국가 전체의 예산과 인원을 담당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범죄를 다루는 부처라는 이유만으로 법무부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될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인 민간법인 역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밀히 살펴볼 이유가 등장하게 된다.

2. 경찰과 검찰의 업무 영역 구분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반면 검찰청법 제4조

38) 한상원,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한 한일 법제전문가 초청워크샵 발제문, 2007.11.24, 45면 이하.

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지휘 및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 및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직무와 권한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동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Klageerhebung)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공소에 의하여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³⁹⁾.

이처럼 경찰과 검찰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본다면 경찰은 위협예방과 범죄수사를, 검찰은 수사와 공소제기와 유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사라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각종 조서 작성·증거수집 등 동일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⁴⁰⁾, 한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형사사건의 약 97%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실무상으로 검사의 지휘없

39)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313면.

40) 박노섭,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2005, 232면 이하.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이 경찰 수사가 개시·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수사 지휘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수사활동 자체가 가지는 탄력성, 기동성, 광역성, 수사방법의 비정형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수사활동 모두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⁴¹⁾.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현장에 경찰은 출동하지만 검찰은 출동하지 않는다. 즉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를 당한 자 또는 이웃은 범죄신고 112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검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 이런 신고를 통하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단순 폭행사건일 경우 지구대에서 출동하지만,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일 경우 경찰서 형사과에서 감식팀과 강력범죄팀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건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현장에 출동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한다. 바로 이런 범죄현장에서부터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검찰은 사후에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기·횡령·배임 등 경찰서 수사과에서 취급하는 고소사건의 경우 검찰청에 접수되어 처리되기도 하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건의 97%를 경찰이 취급하고 있고, 경찰이 취급한 사건에 대해 사후에 검찰이 재차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역시 경찰이 먼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를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보다는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범죄발생현장에서부터 수사종결시까지의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은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41) 신양균,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163면 이하.

될 부분은 검찰조직의 구조이다. 우리나라 검찰조직을 보면 공판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형사부, 특수수사부 등에 주력하고 있고, 이도 모자라 검사 밑에 입회계장, 검사장 소속하에 수사관 등을 배치해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⁴²⁾. 공판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면서도 실제로 공판부 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미비한 이율배반적 구조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구분을 통해서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수사종결시까지,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고, 총괄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3. 관련 부처 업무영역의 명확화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경찰과 검찰의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이 의미가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동일한 원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과 관련 있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내 각 기관의 활동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피해상담은 법무부·검찰·경찰 모두 행하고 있고, 형사절차 참여보장 역시 각 기관이 상담이나 정보제공,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여 실제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42) 성홍재, 각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경우신문 제1344호.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기관만을 이용하게 되고, 설사 다른 기관에 문의할 지라도 중복하여 보호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만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이다. 법무부에서도 의료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안내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실제로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에서는 의료지원업무가 없다. 이 업무를 경찰청에서만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각 관련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각 기관을 통·폐합하여 전문화·집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각 부처별로 특화해야되는 업무가 있고 이는 한 부처에서 통합처리할 수 없음을 법무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각 관련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 법인의 역할

범죄현장에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 법인의 역할

하는 경찰이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 활동에 대해 어떤 예산도 없고 모든 것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단지 병원에 경찰관을 파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게다가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다른 범죄피해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부터 사건 수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려 하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법인을 많이 활성화하고, 이러한 법인과 경찰과의 Network를 구축하여 민간 법인이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형성되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각 Kanton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가 있고,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이러한 자문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법인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Network를 구축하고, 이 체제가 실효성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법인에 대한 지휘·감독뿐 아니라 전문가 양성, 의료지원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민간 법인에 대한 예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다시금 도출된다.

43) 여성가족부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위해, ‘One-Stop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본 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청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한 바 경찰은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해 어떤 예산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책

이러한 장기적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대해 부처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그 영역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는 것처럼 각 부처별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영역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스위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와 현황, 조직 등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비교하고, 비교결과 도출된 결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미 언급한 입법평가제도이고, 특히 입법평가의 기능 측면에서 고찰할 때 더욱 더 명확해진다.

입법이란 무엇인가? 특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공포된다. 입법자는 수범자(개인, 기업, 관청)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태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입법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즉, ‘실무에서 입법이 그 기능을 충족하는가? 설정된 입법 목표가 도달되는가? 어떤 것이 입법의 효과인가?’ 등을 입법평가가 다룬다. 따라서 입법평가는 입법 효과성(입법평가)에 대한 방법적 조사와 판단 및 입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국가의 조치가 지향하는 출발점을 다룬다.

효과성 조사와 판단은

- 공감할 수 있는 고려와 발언에 근거한다면, 즉 특히 고려와 발언의 근거가 알려지고 접근할 수 있고 검사될 수 있다면,
- 체계적이고 가능한 모든 중요한 효과를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진행과정에 근거한다면,
- 가능한 객관적인 효과성 조사와 판단을 위해 노력한다면, 즉 특별하고 부분적인 관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정의된 평가는 순수한 정치적인 효과성 판단에 해당하는 것처럼, 단지 감명적이고 직관적인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른 한

VI. 결론(입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편으로는 이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는 학문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분석에 강제적으로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 평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런 2개의 기둥사이에서 움직이고, 일상적 지식과 행정경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려고 시도할 뿐 아니라, 존재하거나 가능한 한, 학문적 지식을 이용하고 학문적 진행과정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방법적 성격을 제시하는 입법평가는 보통 행정내부 또는 공개된 보고서의 형태에서 반영된다.

입법평가가 입법준비와 적용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사전적, 병행적 그리고 사후적 입법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적 입법평가(효과성 예측)는 입법 결정의 초기단계에서 실행된다; 이는 입법자의 결정을 위한 본질적인 지원이다. 병행적 입법평가(모니터링)는 전환 또는 집행단계에서 실행되고 무엇보다도 집행을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사후적 입법평가(효과성 통제)는 입법 공포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통제와 감독에 기여하고, 입법의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수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입법평가는 모든 중요한 효과성 관련 요소들과 효과성 전체에 관심 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다음 세 가지 효과성기준, 즉 효과성, 실효성과 효율성이 우선 제시된다. 효과성의 기준은 법률 규정이 준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규범적 모델과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수령자 내지 집행센터의 행태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 요소(규범적 모델과 태도)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만, 달리 말하면 행태가 규범적 모델에 기인할 때만 효과성에 대해 언급될 수 있다. 실효성의 기준은 입법의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효율성의 기준은 비용-수익-비교를 내용으로 한다; 비용에서는 한편으로는 행정 내부의 비용과 행정 외부의 부담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부작용, 즉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성이 조사된다. 수익에서는 한편으로는 목표에 부합되는 효과성(목표달성정도)과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부작용에 대해 조사한다; 이때 물질적 비용과 수익뿐 아니라 비물질적 비용과 수익도 포함된다; 가능한 한 비용과 수익은 계량화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좋다.

결국 입법평가라는 것은 입법의 목표가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병행·사후적 평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된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살펴볼 경우 관련 법률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이유 역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효과성, 효율성, 실효성의 증대이다. 바로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입법평가제도는 그 의미가 있고,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평가하고 입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결국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수정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변보호제도는 어떤 기관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배상명령제도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문센터 및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시간관계상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경찰대학, 과학수사론, 2007.

경찰청, 경찰백서 2007.

_____,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2007.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2002, 치안연구소.

_____,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999, 113-144면.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2006, 진리탐구.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제17전정신판, 박영사.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2004.

박노섭,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2005, 227-245면.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 200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성홍재, 각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경우신문 제1344호.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논문집 제13집, 1993, 191-225면.

참 고 문 헌

신양균,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3호), 147-171면.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9-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박영사.

박영도/장병일 역, 입법평가 입문 2007, 한국법제연구원.

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3_08.jsp(경찰청 홈페이지, 2007. 11.15. 검색).

www.mogef.go.kr/htm/view/view03/vi0803_8.jsp(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07. 11.15. 검색).

<http://icic.sppo.go.kr>(대검찰청 홈페이지, 2007.11.15. 검색).

www.moj.go.kr(법무부 홈페이지, 2007.11.15. 검색)

2. 해외 문헌

Dritter Bericht des Bunesamts für Justiz an den Bundesrat über den Vollzug und die Wirksamkeit der Opferhilfe(1993-1999), Bern, 2000.

Böhret, Carl Zuerst testen dann verabschieden. Erfahrung mit der Prüfung von Gesetzentwürfen, ZG 1992.

König Klaus Evaluation als Kontrolle der Gesetzgebung, in: Waldmar Schreckenberger(Hrsg.), Gesetzgebungslehre, - Grundlagen, Zugänge, Anwendungen -, 1986.

Neumann, U.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 in: Hassemer, W. Hrsg.), Strafrechtspolitik, Frankfurt a.M., Peter Lang, 1987. 225-253면.

Schünemann, B. Zur Stellung des Opfers im System der Strafrechtspflege, NStZ, 1986, 193-200, 439-443면.

부
속

【부록 1】 스위스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1991년 10월 4일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피해자구조법)

(2005년 12월 27일 현재)

1990년 4월 25일 연방의회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연방헌법 제64조 bis에서 제64조ter에 보장된 스위스연방의 연방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 1 절 일반규정

제 1 조 목적과 대상

- ①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그 법적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구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상담
 - 나. 피해자보호와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 권리보장
 - 다. 보상과 배상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범죄에 의해 신체적·성적·정신적 완결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는 범인수사 및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본 법에 의거하여 구조된다.
- ② 피해자의 혼인배우자, 등록된 동거배우자, 그 자녀와 부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사항에서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부록 1】 스위스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가. 상담(제3조 및 제4조)

나. 범죄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법상의 권리행사와 민사상의 청구권 행사(제8조 및 제9조)

다. 범죄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및 보상(제11조 내지 제17조)

제 2 절 상 담

제 3 조 상담소

① 각 주는 전문적으로 자립형 공식·비공식 상담소를 운영한다. 다수의 주(州)가 공동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가.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 사회, 재정 및 법률적 구조를 제공하고 중개한다.

나. 상담소는 피해자구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③ 상담소는 상당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구조한다.

④ 상담소의 구조행위와 제3자 긴급원조는 무상으로 한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비,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용과 같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⑤ 피해자는 자신이 선택한 상담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제 4 조 비밀유지의무

① 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기관과 일반인에 대해 자신이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비밀유지의무는 상담소의 업무종료 후에도 적용된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④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3 절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제 5 조 인격보호

- ① 해당기관은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한다.
- ② 해당기관과 일반인은 피해자구조가 형사소추의 이해관계상 불가피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공개적인 재판절차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공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중대하게 요구될 경우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 성적인 완결성에 관한 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④ 해당기관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피고와의 대면을 피한다. 피고의 요구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청문을 고려한다. 청문에 대한 피고의 요구가 다른 방법으로 보장될 수 없거나, 형사소추의 주된 이해관계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질을 지시할 수 있다.
- ⑤ 성적 완결성에 대한 범죄의 경우 방청에 대한 피고의 요구가 다른 방법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도에 반하여 대질이 지시된다.

제 6 조 경찰과 조사기관의 임무

- ① 경찰은 최초로 심문할 때 피해자에게 상담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경찰은 상담소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하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 전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성적 완결성에 관한 범죄피해자는 동성의 조사관과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신문절차에도 적용된다.

제 7 조 동석과 진술거부

- ① 피해자는 증인 또는 정보인으로서 질의를 받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동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소송권

- ① 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가. 피해자가 민사상 청구를 하거나, 나. 소송절차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종결된 경우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거나, 다. 이미 사전에 소송에 참여하여 민사청구로 결정이 되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고인과 같이 동일한 법적수단으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해당기관은 형사소송절차의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기관은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에 대한 결정 및 판결을 통지한다.

제 9 조 민사청구

- ① 범인이 자백하지 않거나, 소송이 종결되지 않는 한 형사법원은 피해자의 민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다.
- ② 법원은 우선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고, 추후에 민사청구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민사청구에 대한 완전한 판단에 현저히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경우 형사법원은 기본원칙에 의거 청구사항을 결정하고 피해자를 민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각 주(州)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처벌명령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민사청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재판법원의 구성

성적 완결성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는 당해법원에 최소한 동성의 조사인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a절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의 인격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제10a조 아동의 정의

제10b조 내지 제10d조에서 피해자로서의 아동이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시점에서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0b조 아동과 피고인의 대질심문

- ① 성적 완결성에 대한 범죄의 경우 해당기관은 아동을 피고인과 대질심문하지 않는다.
- ②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대질(심문)이 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 부담이 되는 때에는 대질심문을 배제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청문요구를 다른 방법을 통해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대질심문은 유보할 수 있다.

제10c조 아동의 심문

- ① 아동은 통상 소송기간 중 2회 이상 심문 받지 아니한다.
- ② 첫 번째 심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하고, 아동심문의 목적으로 교육받은 여수사관 또는 적절한 수사관 등 전문가의 동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당사자는 질문자를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심문장소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하고 녹화한다. 질문자와 전문가는 보고서 작성시 조사내용을 확정한다.
- ③ 첫 번째 심문에서 양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수사 또는 아동의 이해관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두 번째 심문을 실행한다. 가능한 한 첫 번째로 심문했던 사람과 동일인에 의해 질문하도록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부록 1】 스위스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 ④ 해당기관은 심문이 아동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소송절차상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10d조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 ① 관할형사사법기관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가. 아동의 이익상 형사소송절차의 중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아동의 이익이 형사소추에 관한 국가의 이익보다 분명하게 우선되는 경우.
 - 나. 아동 또는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절차의 중지에 동의한 경우.
- ② 해당관청은 제1항에 의거한 중지시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중지예 대한 주(州)의 최종심급의 결정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 피고인, 아동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및 검사는 무효확인소송에 관여된다.

제 4 절 보상과 배상

제11조 당사자적격과 관할

- ① 스위스에서 자행된 범죄의 피해자는 그 범죄행위가 자행된 주(州)에서 보상과 배상을 받는다. 형법 제346조가 준용된다.
- ② 외국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스위스 시민권과 스위스에 주소를 가진 자가 외국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주소지의 주(州)에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전제조건

- ① 피해자는 그 소득평가액이 양로, 유족 및 (국영)상해보험을 위한 추가지급금(ELG)에 대한 1966년 3월 19일 연방법 제3c조에 따라 ELG 제3b조 제1항 a의 일반적 필요생활비를 위한 최고적정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 ② 피해정도가 심하고 특별한 정황이 입증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수입과 별도로 배상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평가

- ①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수입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수입이 ELG에 의거 일반적 필요생활비를 위한 최고적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피해자의 수입이 최고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감액된다.
- ② 손해가 피해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상은 감액될 수 있다.
- ③ 의회는 최고·최저금액을 확정하고, 보상평가의 추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급부의 보충성

- ①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받게 될 급부는 보상금으로부터 공제된다. 이미 제12조 제1항의 소득평가액의 계상에서 고려된 급부(특히 연금 및 퇴직금) 제외된다.
- ② 해당기관이 보상 또는 배상을 인정한 경우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주어진 청구권은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내에서 주(州)에 위임된다. 이 청구권은 피해자에 이미 주어진 청구권 및 제3자의 채수용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부록 1】 스위스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 ③ 주(州)는 범인의 사회적 재편입이 필요한 경우 범인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5조 우선변제

보상신청의 개괄적인 평가에 의거 가. 피해자가 즉각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나. 범죄의 결과가 가까운 장래에 충분한 안정상태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우선변제 된다.

제16조 소송절차와 권리상실

- ① 각 주(州)는 약식, 신속 및 무료소송절차를 둔다.
- ② 해당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 ③ 피해자는 범죄발생 후 2년 내에 보상과 배상에 대한 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청구권은 상실된다.

제17조 법적보호

각 주(州)는 행정관청과 무관하게 한번의 항소심을 규정한다. 항소심은 자유심사권한을 갖는다.

제 5 절 재정보조와 결과규정

제18조 연방의 직업교육 및 재정지원

- ① 연방은 상담소 및 피해자구조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전문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연방은 성적 완결성에 대한 범죄피해자인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 ② 연방은 피해자구조의 마련을 위해 각 주(州)에 6년의 기간동안 재정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은 각 주(州)의 재원과 인구수에 따라 구분한다. 각 주(州)는 재정지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2년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③ 주(州)에 과도한 사건발생으로 인하여 특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연방은 추가로 재정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제19조 국민투표와 발효

- ① 이 법은 임시국민투표에 따른다.
- ② 연방의회는 발효에 관한 규정을 둔다.

【부록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05.12.23 법률 제773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①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 4 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 5 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시책

제 7 조 (손실 복구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

【부록 2】 범죄피해자보호법

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계기관 협조)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록 2】 범죄피해자보호법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16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감독 등)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법인의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무정지·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20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록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이유로 수수료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벌 칙

제24조 (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법인이 등록법인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07731호, 2005.12.2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2006.5.10 대통령령 제19467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①「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관련정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3. 형집행상황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 명령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 ②형사절차관련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관련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형사절차관련정보의 제공은 서면·구두·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조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③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 ⑤제5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용한다.
- ⑥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나.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응급진료 및 치료

마.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과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구조 신청에 대한 안내 등 법률구조 지원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의 운영

아.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법인의 임·직원 중 10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변호사·의사 등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의료 등 해당전문분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법률구조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등록) ①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효과
 8.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보조금 내역
- ③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실적
 3. 사업수행능력
 4. 신청사업의 타당성
 5.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보조금 내역
- ②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이유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③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

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지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벌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67호, 2006.5.1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2006년도에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기한은 제10조제3항에 불구하고 200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록 4】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2006.5.24 법무부령 제58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채용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취임동의서 및 임·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등록증의 교부 등)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의 기재는 영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87호, 2006.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 참고자료1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	2007	2008안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예산액	1,000	944	1,200
	(민간보조)	(951) 인건비보조 396 시설비보조 555	(865) 인건비 보조 396 우수법인 지원 469	(1,121) 인건비보조 660 우수법인지원 461
형사조정활성화	예산액	-	260	500
	(민간보조)	-	250 형사조정위원수당	455 형사조정위원 수당 425 형사조정위원교육 강사료 30

【부록 6】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출 계획안⁴⁴⁾

<연도별 예정 재정소요추계표>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세 입	-	-	-	-	-	-
세 출	10.4	10.7	11	11.3	11.8	55.2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	0.5	0.6	0.6	0.6	0.6	2.9
인 건 비 (보조금)	4.4	4.5	4.6	4.7	5.1	23.3
시 설 비 (보조금)	5.5	-	-	-	-	5.5
사 업 비 (보조금)	-	5.6	5.8	6.0	6.1	23.5
세출 재원조치	10.4	10.7	11	11.3	11.8	55.2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10.4	10.7	11	11.3	11.8	55.2
○ 일반회계	10.4	10.7	11	11.3	11.8	55.2
○ 특별회계	-	-	-	-	-	-
○ 기 금	-	-	-	-	-	-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	-	-	-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	-	-

44) 2005년 8월 31일, 정부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부록 7】 기초 시설비(2006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자산 취득비	책 상 250,000원*3개	750
	사무용 의자 150,000원*3개	450
	개인용 서랍 130,000원*3개	390
	키폰 전화기 250,000원*3개	750
	책장 200,000원*1개	200
	서류보관 캐비넷 180,000원*1개	180
	복사기 6,000,000원*1개	6,000
	모사전송기 1,200,000원*1개	1,200
	레이저 프린터 1,000,000원*1개	1,000
	개인용 컴퓨터 1,300,000원*3개	3,900
	탁자 등 집기 2,000,000원	2,000
합 계		16,820
1개소 보조금	16,820천원*0.6 = 10,092천원	
시설비 보조금 총액	10,092천원*55개소= 555,060천원	

【부록 8】 인건비 연도별 보조액(2006~2010년)

연 도	내 역	소요액(천원)
2006	660,000원(생활복지사 1호봉)*55명*12개월	435,600
2007	679,000원(생활복지사 2호봉)*55명*12개월	448,140
2008	697,000원(생활복지사 3호봉)*55명*12개월	460,020
2009	715,000원(생활복지사 4호봉)*55명*12개월	471,900
2010	767,000원(생활복지사 5호봉)*55명*12개월	506,220

[부록 9]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비(2007년 이후)

【부록 9】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비(2007년 이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응급 구호비	30,000원*20건*55개소*12개월*0.5	198,000
상담비	30,000원*30건*55개소*12개월*0.5	297,000
수사기관등 동행지원	5,000원*20건*55개소*12개월	66,000
총 계		561,000

【부록 10】 범죄피해자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의 예산비용 (2006년)

구 분	내 역	소요액 (천원)
연구용역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30,000천원*1건	30,000
위원회 운영	운영수당 70,000원*10명*4회	2,800
	업무추진비 30,000원*20명*4회	2,400
교육비 등	범죄피해담당자 교육 105,260원*55명*2회	11,579
	교육 담당 강사료 200,000원*7명*2회	2,800
	교육교재(100쪽, 300부) 1,350,000원	1,350
	범죄피해자주간 행사비 3,310,000원*1회	3,310
총	계	54,239

【부록 11】 스위스 각 Kanton의 공인 피해자지원 자문기관 주소록

칸 톤	명 칭 과 주 소
AG	Opferhilfe Aargau (아르가우 피해자지원센터) Postfach 5001 Aarau
AI	Beratungsstelle Opferhilfe der Stiftung für Opfer strafbarer Handlungen (범죄행위 희생자를 위한 재단의 피해자자문센터) Oberer Graben 3, 9000 St.Gallen Tag und Nacht Soforthilf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Jugendliche, Dienst der Frauen- klinik am Kantonspital St.Gallen und der Beratungsstelle Opferhilfe St.Gallen (성폭행피해자 그리고 청소년 성갈렐 피해자자문센터와 부 인과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
AR	Beratungsstelle Opferhilfe der Stiftung für Opfer strafbarer Handlungen (범죄행위 희생자를 위한 재단의 피해자자문센터) Oberer Graben 3, 9000 St.Gallen Tag und Nacht Soforthilf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Jugendliche, Dienst der Frauen- klinik am Kantonspital St.Gallen und der Beratungsstelle Opferhilfe St.Gallen (성폭행피해자 그리고 청소년 성갈렐 피해자자문센터와 부 인과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
BL/BS	<u>Allgemeine Beratungsstelle(일반자문 센터)</u> Beratungsstelle Opferhilfe bei der Basel (바젤의 범죄피해자자문센터) Schwarzwaldalle 171 4058 Basel <u>Beratungsstelle für Frauen(여성 자문센터)</u> Nottelefon(긴급전화)

<p>BL/BS</p>	<p>Beratungsstelle und Opferhilfe für gewaltbetroffene Kinder und Jugendliche (폭행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피해자자문센터) Grenzacherstrasse 34 4058 Basel <u>Beratungsstelle für Kinder und Jugendliche</u> (아동과 청소년 자문센터) Triangel Opferhilfe-Beratungsstelle bei der Basel für gewaltbetroffene Kinder und Jugendliche(폭행관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피해자자문센터) Grenzacherstrasse 34 4058 Basel</p>
<p>BE</p>	<p>Fürsorge des Kantons Bern Koordinationsstelle Opferhilfe (베른의 피해자지원 협조기관) Rathausgasse 1, 3011 Bern Beratungsstelle Opferhilfe Eigerplatz 5, 3007 Bern Service d'aide aux victims Rue Rechberger 2 2502 Bienne Beratungsstelle für vergewaltigte Frauen und Mädchen (성폭행 피해 여성을 위한 자문센터) Rodtmattstrasse 45, 3014 Bern Frauenhaus Bern (베른 여성의 집) Postfach 297, 3000 Bern 7 Frauenhaus Biel/Solidarité Femmes Postfach/C.P. 84 Bahnhofstrasse/Rue de la Gere 36 2501 Biel/Bienne Frauenhaus und Beratungsstelle (여성의 집과 자문센터) Thun/Berner Oberland Scheibenstrasse 3 3600 Thun</p>

【부록 11】 스위스 각 Kanton의 공인 피해자지원 자문기관 주소록

<p>BE</p>	<p>Die Dargebotene Hand (온정의 손길) Postfach 585, 3000 Bern 9</p> <p>Die Dargebotene Hand Nordwest La Main Tendue du Nord-Ouest Postf./C.p. 500, 2501 Biel/Bienne</p>
<p>FR</p>	<p>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homme Avenue du Général Guisan 56 1700 Fribourg</p> <p>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femmes Came postale 807 1701 Fribourg</p> <p>Le Centre de consultation LAVI pour enfants et adolescents Boulevard de Pérolles 30 1700 Fribourg</p>
<p>GE</p>	<p>Centre de consultation LAVI 40, rue du Stand, 1204 Genève</p>
<p>GL</p>	<p>Opferhilfeberatungsstelle des Kantons Glarus (피해자지원 자문센터) Kantonaler Sozialdienst (자치체 사회봉사단체) Winkelstrasse 22 8750 Glarus</p>
<p>GR</p>	<p>Opferhilfe-Beratungsstelle (피해자지원 자문센터) Rohanstrasse 5 7000 Chur</p> <p>Opferhilfe-Beratungsstelle A l'En 7503 Samedan</p>

【부록 12】 한국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 부서

순번	명칭	주소
1	(사)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08-9 원주지청 범방실
2	(사)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3	(사)태백·영월·평창· 정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8리 876번지 영월지청
4	(사)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 209호
5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1 홍성지청 310호
6	(사)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주시 반죽동 332 공주지청 2층
7	(사)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논산지청 207호
8	(사)충남서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서산지청 312호
9	(사)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불당동 234-1 천안지청 본관 1층
10	(사)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번지 청주지검 212호
11	(사)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주시 교현2동 720-2번지 충주지청 107호
12	(사)제천·단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동 3-3 제천지청 3층
13	(사)영동·옥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영동지청별관 방법실
14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번지 대구지검 2315호
15	(사)안동·영주·봉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2 안동지청 209호
16	(사)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검

【부록 12】 한국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 부서

순 번	명 칭	주 소
17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서울동부지검 별관 425,426호
18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313-1호 서울남부지검 613호
19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622 서울북부지검 256,257호
20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로 99(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검 916호
21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4 의정부지검 109호
22	(사)고양·과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 고양지청 711호
23	(사)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학익2동 278-1 인천지검 1106호
24	(사)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부천지청 314-315호
25	(사)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검 143호
26	(사)성남·광주·하남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3-3 아람방송 1층
27	(사)여주·이천·양평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361 여주지청 204호
28	(사)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7 남부문예회관 1층
29	(사)안산·광명·시흥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번지 안산지청 201호
30	(사)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74-19번지 1층
31	(사)강릉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강릉지청 122호
32	(사)경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 노동동 12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층

【부록 12】 한국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 부서

순 번	명 칭	주 소
33	(사)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3-6번지
34	(사)김천 피해자지원센터	경북 김천시 남산동 49-15 김천사회복지회관
	(사)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미시 공단동 256-17 시민복지회관 2층
35	(사)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시 만산동 652-2 상주지청 108호
36	(사)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748 의성지청
37	(사)부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33-230번지 울곡빌딩 905호
38	(사)부산동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송2동 1133 부산동부지청 417호
39	(사)울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 남구 옥동 289-3번지 건강빌딩 2층
40	(사)창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원시 대방로 101번지 창원지검 103호
41	(사)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본성동 6-10번지 1층
42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통영시 도천동 28번지 통영시청 별관 3층
43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번지 밀양지청 212호
44	(사)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1 거창지청 별관
45	(사)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검 208호
46	(사)목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목포시 용해동 818번지 목포지청 범방실
47	(사)장흥·강진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105번지
48	(사)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왕지동 777-1번지 순천지청 526호

【부록 12】 한국의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 부서

순 번	명 칭	주 소
49	(사)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 해남지청 2층
50	(사)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8 향림빌딩 1층
51	(사)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군산지청 508호
52	(사)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시 수성동 609-7 정읍지청 412호
53	(사)남원지역범죄피해 자지원센터	남원시 동충동 141번지 남원지청 2층
54	(사)제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 206호
55	(사)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9